

DOING BUSINESS IN KOREA

외국인투자 가이드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PART
I

투자가이드

1장. 외국인직접투자제도 8

1. 외국인직접투자 / 8
2. 외국인투자촉진법 / 11
3. 외국인투자 촉진 및 규제 / 12

2장. 외국인직접투자절차 18

1. 외국인투자절차 / 18
2.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 25

3장. 법인설립 28

1. 외국인의 국내 진출방법 / 28
2. 현지법인 설립 / 29
3.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 32

4장. 투자인센티브 35

1. 조세지원 / 35
2. 현금지원 / 45
3. 입지지원 / 52

•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여러 제도와 규정이 부분적으로 변경될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19 대한민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투자종합상담실 (우: 06792)

- 전 화 : 82-2)1600-7119

- 홈페이지 : www.investkorea.org

※ 본문에 표시된 법/영/규칙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PART
II

기업경영정보

1장. 비자 및 체류 68

1. 사증(비자) / 68
2. 체류 / 72
3. 투자외국인 우대제도 / 77

2장. 인사·노무 82

1. 노동법 / 82
2. 노무관리 / 83

3장. 조세 88

1. 조세 / 88
2. 국세 / 89
3. 지방세 / 94

4장. 통관·관세 100

1. 통관 / 100
2. 관세감면 및 환급 / 106

5장. 금융·회계 108

1. 금융시스템 / 108
2. 회계제도 / 113

6장. 외국인부동산취득 116

1. 외국인부동산취득 제도 / 116
2. 외국인부동산취득 절차 / 119
3. 부동산매매대금 반입 및 반출 / 122
4. 부동산 관련 조세 / 123

7장. 공장설립 126

1. 공장의 정의 / 126
2. 공장설립 인허가 실무 / 130
3. 공장 입지 및 승인 절차 / 135

8장. 지식재산권 138

1. 지식재산권 제도 / 138
2. 지식재산권 보호노력 / 146

부 록

- KOTRA 투자거점무역관 / 152
 수탁기관 리스트 / 157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리스트 / 159

외국인투자 가이드 주요 변경사항

외국인직접투자제도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개정 사항

업종명	개정 내용	비 고
태양력 발전업(35114)	추가	-
전기판매업(35130)	추가	-
육류도매업(46313)	코드번호 변경	46312 → 46313
항공여객운송업(51100)	업종명 변경	정기항공운송업 → 항공여객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51200)	업종명 변경	부정기항공운송업 → 항공화물운송업
무선 및 위성통신업(61220)	업종명 통합	무선통신업과 위성통신업이 통합됨

투자 인센티브

■ 법인세 감면 폐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2019년부터 전면 폐지(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존치)되며, [외국인투자 가이드]에 수록된 법인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 조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특례내용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50% 감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	'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특례 적용	'21.12.31.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 조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기존과 동일
적용기한	'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도 '18.12.31.까지만 적용(또한 2017년부터 적용 세율은 19%)	'21.12.31.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 현금지원 제도개정 안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2019년 중 중요한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적용시점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새만금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해제 (경제자유구역 현황: 8개 → 7개)

경제자유구역(변경 전)		경제자유구역(변경 후)	
부산.진해	대구경북	부산.진해	대구경북
광양만권	새만금군산(새만금사업지역)	광양만권	동해안
인천	동해안	인천	충북
황해	충북	황해	

* 새만금지역은 '18.4.6.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해제 되었으나,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으로 계속 추진

체류

■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

「출입국관리법」 개정(시행 '18.9.21.)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영주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일정 기한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 고액 투자법인 임원에 대한 영주자격(F-5) 관련 제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로 5명 이상 국민을 고용한 사람만 영주자격 신청 가능 ※ 외국인투자법인 임원은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없었음	외국인투자가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법인 임원도 영주자격 신청 가능.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파견한 임원(감사 또는 이사만 해당)으로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영주자격 부여. 단, 정규직으로 고용된 국민 10명당 1명의 임원에게 부여되며, 외국인투자기업당 최대 10명의 임원에 대해서만 영주자격 부여

노무

■ 최저임금 인상

변경 전(2018년 적용)	변경 후(2019년 적용)
시간급 7,530원 일급 60,240원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 8,350원 일급 66,800원 (8시간 근로기준)

조세

■ 법인세 기본세율표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0만 원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22%	4억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5%	94억 2,000만 원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Doing Business in Kore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PART
I

투자가이드

1장 외국인직접투자제도

Foreign Direct Investment

1.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식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금 이외에도 자본재,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국내부동산, 외국상장기업의 주식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인정하는 출자목적물의 투자를 포함하며, 출자한 외국투자가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1-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주식투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1-2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과 출자한 내국법인에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1)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
-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

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외국투자자가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나 비율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이 투자를 완료한 후의 비율로 산출합니다. 투자금액이란 주식 등의 취득금액을 말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 및 제461조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010.10.6. 시행)], 이 경우 외국투자자가 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 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015.12.30. 신설).

* 주)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자 소유 주식등의 비율(「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3항)

투자금액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인투자비율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나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그 국내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2) 장기차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

-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자)
-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자)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③ 외국투자자(개인)
- ④ 외국투자자(개인)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최초 대부계약시 정해진 대부기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제5항)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자(개인)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라목)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합니다.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책임자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에 해당할 것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용어	정의(「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외국인	•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 - IBRD, IFC, 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개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 -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4년 이상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4년 미만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1년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자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외국인 학교, 의료시설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출자목적물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투자수단)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 수단 - 자본재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 -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산업활동에 이용되는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첨부) -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주식과 부동산 처분대금
자본재	• 산업시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품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 그 밖에 주무부 장관이 해당 시설의 최초 시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예비품 •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3항)

2.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 외국인투자 유치 및 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획기적인 개방과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예외조치로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증손회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제한(100% 지분 소유)의 예외를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법률 제12225, 2014.1.10.공포, 3.11.시행). 즉, 대규모기업집단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증손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외국인은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그동안 투자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신고 제도를 단순하게 통합하였습니다. 즉, 종전의 신주 또는 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기존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합병 등에 의한 주식지분취득신고서를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하나로 통합하였고, 주식양도·감소 신고를 폐지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변경등록 신청으로 통합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신청도 폐지하고 말소사유 발생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말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술도입계약신고와 자본재처분신고도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과 관련한 수의계약 예외조항을 시행령 규정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괄처리민원사무는 개별법의 일괄처리민원사무 조항을 포괄적으로 인용하도록 변경하여 개별법 개정사항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자동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16.1.27.공포, 7.28.시행).

종 전	2016년 개정 후	비 고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허가신청서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취득신고서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허가신청서(투자신고서 통합)	주식취득의 경우 단일 투자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로 통합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	주식 양도감소 신고 폐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청으로 대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	등록말소신청 폐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청 또는 직권등록말소로 대체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이해
-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법령

2-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이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며, 하위 법령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2-2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법령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세 감면은 2019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순수 내국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기본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 7. 6, 종전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 고시)
- 조세특례제한법(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시행령·시행규칙

기타법령

-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3. 외국인투자 촉진 및 규제

해외투자에 따르는 통상적인 사업상의 위험 외에도 현지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를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에 관해서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통합공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 외국인투자의 보호
-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금지

3-1 외국인투자의 자유화(「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3-2 외국인투자의 보호(「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일반 증권투자나 채권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보다 투자보호수준을 강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대외송금 보장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 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2) 외국환거래의 정지(Safeguard) 조항 예외 적용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제3항),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의 동 조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4항).

(3) 내국민 대우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4) 조세감면 규정 등의 차별 적용배제

대한민국 국민(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차관의 대주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3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금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96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1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제외업종), 1,135개 투자대상업종 중 29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 등에 제한을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제한업종).

(1)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성격의 업종으로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등
-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교육기관(유아, 초·중·고등·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 단체 등

(2)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도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됩니다. 다만 허용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투자가 허용됩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2]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및 부분허용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 부분허용 업종을 2개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투자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제한업종(미개방업종 3개포함) 및 허용기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별표2), '18.7.6. 개정

업종명 (‘17년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허용기준	소관부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10)	벼 재배 및 보리 재배 제외하고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육우 사육업(0121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원자력 발전업(35111)	< 미 개 방 >	산업통상자원부
수력발전업(35112) 화력발전업(35113) 태양력발전업(35114) 기타발전업(35119)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한전(자회사 포함)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송전 및 배전업(35120) 전기판매업(35130)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2. 외국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는 내국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 전기판매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에만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3824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육류 도매업(4631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내항 여객운송업(50121) 내항 화물운송업(5012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1. 허용대상: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2. 대한민국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일 것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해양수산부
항공여객 운송업(51100) 항공화물 운송업(51200)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51)·국내항공(51)·소형항공(51) 운송사업으로 구분	국토교통부
신문 발행업(5812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단,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미만인 경우까지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라디오 방송업(60100)	< 미 개 방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방송업(60210)	< 미 개 방 >	방송통신위원회

업종명 (‘17년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허용기준	소관부처
프로그램 공급업(60221)	•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이하인 경우에,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이하인 경우에 허용) ※ 프로그램공급업은 「방송법」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지칭함 •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인 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유선방송업(60222)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20%이하인 경우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성 및 기타 방송업(60229)	•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이하인 경우에 허용) •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외국인 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선통신업(61210)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 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KT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소유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 외국인 의제법인: 외국정부나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법인 •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의 상대국 외국인 의제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 및 위성통신업(61220)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61299)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단, 부가통신업(61299)은 제한이 없음]	
뉴스 제공업(63910)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 허용	
국내은행(64121)	「농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금융),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중앙회(금융)를 제외하고 허용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별표1), '18.7.6. 기준

업종분류	업 종 명	소관부처
61100	우편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4110	중앙은행	기획재정부
64912	개발금융기관 ※ 특별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65301	개인공제업	관련 주무부
65302	사업공제업	
65303	연금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위원회
66199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 어음교환업 등 금융상품 교환서비스 외의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은 외국인 투자 가능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84111	입법기관	-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행정안전부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84211	교육 행정	교육부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84213	환경 행정	환경부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보건복지부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관련 주무부
84221	노동 행정	고용노동부
84222	농림수산 행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84224	우편 및 통신 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229	기타 산업진흥 행정	산업통상자원부
84310	외무 행정	외교부
84320	국방 행정	국방부
84401	법 원	-
84402	검 찰	법무부
84403	교도기관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1.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 영교도소는 외국인투자 가능	
84404	경 찰	행정안전부
84405	소 방 서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관련 주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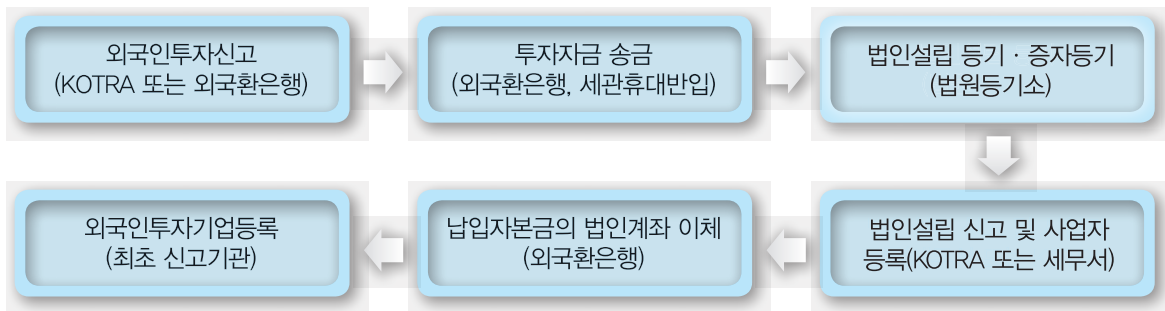
업종분류	업 종 명	소관부처
84500	사회보장 행정	보건복지부
85110	유아 교육기관	교육부
85120	초등학교	
85211	중학교	
85212	일반 고등학교	
85221	상업 및 정보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85222	공업 특성화 고등학교	
85229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	
85301	전문대학	
85302	대학교	
85303	대학원	
85410	특수학교	
85630	사회교육시설 ※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원격교육형태, 사업장·시민사회단체·학교·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가능	
856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학원은 외국인투자 가능	
90131	공연 예술가	문화체육관광부
90132	비공연 예술가	
94110	산업 단체	관련 주무부
94120	전문가 단체	
94200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94911	불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2	기독교 단체	
94913	천주교 단체	
94914	민족종교 단체	
94919	기타 종교 단체	
94920	정치 단체	-
94931	환경운동 단체	환경부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	관련 주무부
9499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99001	주한 외국공관	외교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2장 외국인직접투자절차

FDI Procedures

1.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2개 단계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단, 법인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내 법인기업의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취득 시 증자등기 필요, 기존주식 취득시 증자등기 불필요

- 외국인투자신고
- 유형별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1-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 외국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대리신고 시 위임장 첨부)
- 신고접수기관: 국내은행 본 · 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KOTRA 또는 KOTRA 해외무역관(36개 투자거점무역관)
- 신고처리기간: 즉시(신고증명서 교부)

외국인투자신고는 그 유형에 따라 주식취득 전에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와 주식취득 후 또는 계약체결 후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로 나뉩니다. 해당 유형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신고와 사후신고 >

용어	신고항목	비고
사전신고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내용변경 신고	신주, 기존주식 취득 또는 출연 (단, 기존주식 취득시 방위산업체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신청)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및 내용변경신고	-
사후신고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상장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서 통합) -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증자로 취득 -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으로 취득 -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의 출자 - 매입·상속·유증·증여로 취득 -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 인수 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식 등의 양도/감소 신고	폐지 및 외국인투자기업변경 등록신청으로 대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변경등록: 30일 이내)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국적증명서)
 -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위임장(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 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

필요 시 추가 첨부서류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 기타 주식취득 관련 증빙서류

1-2 유형별 외국인투자신고절차

(1)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이미 발행한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전신고).

제출서류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대리신고 시 위임장 포함)
- 외국투자자의 국적증명서
- 임원선임계약서, 임원선임(파견)보고서(이사회, 주주총회 의사록 등) - 예외요건인 경우 투자비율 10% 미만
- 양수인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존주식 취득 시 투자자가 복수인 경우)
- 기타 출자목적물에 해당하는 필요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 증명서류(발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증명서류
 -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증명서류
 -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증명서류
 - 출자하고자 하는 국내부동산에 대한 자본거래신고필증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식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시)
- 비영리법인 출연을 증명하는 서류
 - ※ 추가 필요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시까지 제출도 가능

1) 신주취득

신주 취득에는

- 외국인이 단독 또는 내국인과 합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국내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 외국인(개인)이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하는 경우(출연방식) 등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 중 외국투자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 투자방법, 영위하려는 사업 등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내용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변경신고 사항).

자본재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후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에 자본재도입물품명세 검토 확인 신청 필요

제출서류

- 자본재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서 3부
- 물품매도확약서 등 가격증빙서류 3부
- 자본재도입 완료 후 KOTRA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

2) 기존주식 등의 취득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전신고).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9% 취득하고 있던 상태에서 3.5%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자 한다면(금번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총 주식취득비율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 3.5% 추가 취득분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므로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또는 허가 신청)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신고 원칙의 예외로서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식 취득에는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국내주주로부터 10% 이상 직접 취득하는 경우
- 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신청), 만약 허가규정을 위반하여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존주식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주식 양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이나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주식 양도자 등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단, 허가인 경우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 취득(「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2항 제2호~제6호)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은 일반적인 신주 취득이나 기존주식 취득과 달리, 주식 등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면 됩니다(사후신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신고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또는 신규등록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 취득 유형으로

-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이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자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가)이나 외국투자가(개인) 또는 그 해외모기업 및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사전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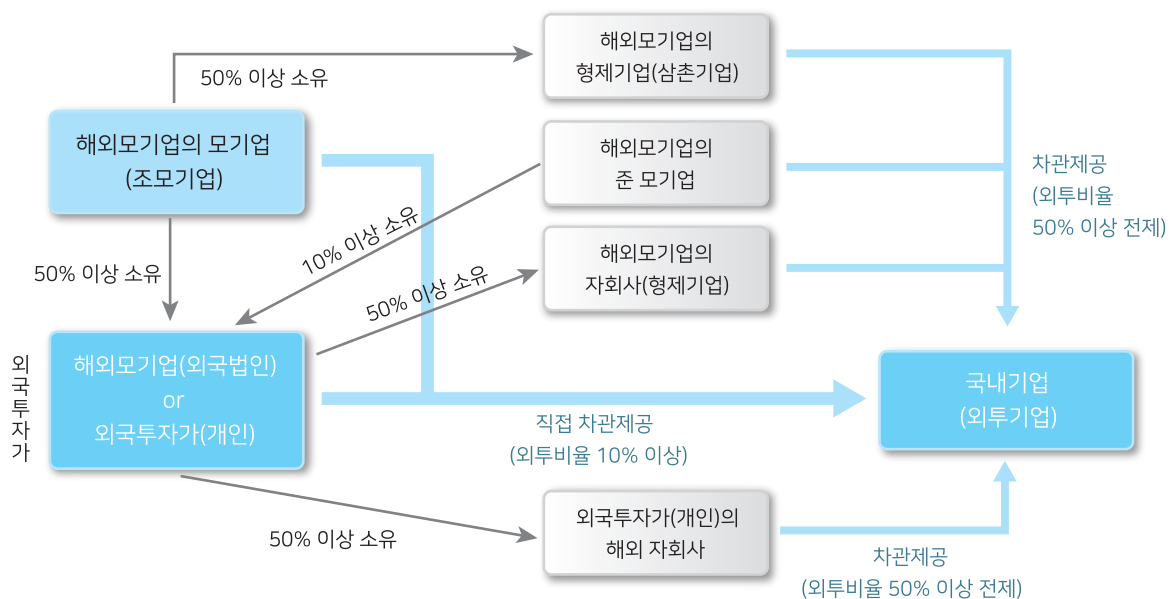
장기차관의 도입주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이며 설립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차주가 될 수가 없으므로 장기차관방식의 투자신고는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된 후 가능합니다. 또한 차관금액은 출자목적물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기관에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첨부하여 차관도착 보고를 하여야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대리신고 시 위임장 포함)
- 차관계약서 사본
- 출자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및 차관제공자의 국적증명서
※다만, 차관계약서 사본은 장기차관자금 송금 전까지 제출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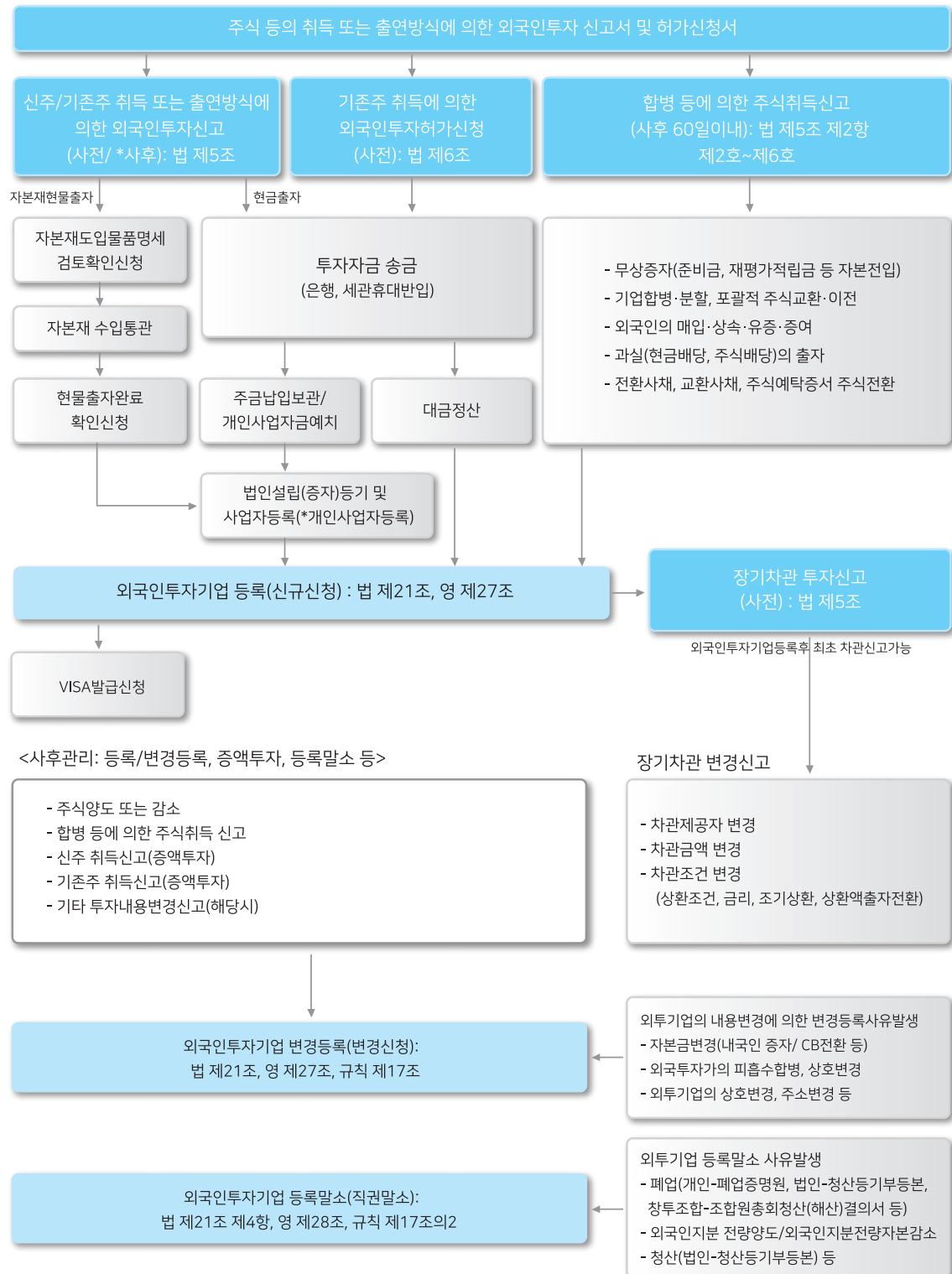
신고한 내용 중 차관 도입금액, 차관조건(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장기차관 흐름도>



(3) 유형별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4) 투자자금 송금

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가 본인의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되어야 하며, 이때 국내원천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금납입 과정에서 은행은 자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 등기 시 필요)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요)를 발급합니다.

(5)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3장 법인설립 참고)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관할 법원 및 세무서에서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칩니다.

(6)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적으로 유효한 법인이 되며, 이에 따라 은행은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을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시킵니다.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연은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신청접수 수탁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함).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신주취득)
-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기존주취득)
- 합병 등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CB전환, 기업분할 등 신규취득)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완료한 경우(출연방식)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1부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송금인(투자가)이 확인되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 주주[조합원, 출연인] 명부(법인인감날인, 원본대조필) 또는 주식대금 양수도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첨부서류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자본재 현물출자 시)
- 「상법」상 감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주식 또는 국내부동산 출자 시)
 - 기타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
 - 대리신고 시 위임장

2.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22조)

외국투자자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후 지분변동이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말소 사유가 확인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사업 영위 또는 다른 국내기업주식의 취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2-1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1) 외국투자자가 합병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2항 제2호~제6호)

외국투자자(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을 취득한 때(합병,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취득 시)
- 외국투자자의 주식양도, 자본감소로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 내국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투자자의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국적이 변경된 경우
- 기타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주소 등 등록내용이 변경될 때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변경)신청서(기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 반납)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 주주명부(법인인감날인, 원본대조필) 또는 주식양수도대금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첨부서류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자본재 현물출자 시)
- 「상법」상 감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주식 또는 국내부동산 출자 시)
- 기타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 등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신고인 경우 위임장

(2)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 또는 자본감소를 한 경우

주식 등을 양도 또는 감소하는 외국투자자(또는 대리인)는 양도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소(감자)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식 등 양도 시 양수인이 새로운 외국인일 경우에는 새로운 외국인은 주식 등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투자금액은 기존 외국투자자의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승계됨).

(3)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이 변경된 경우
- 외국투자자의 상호,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변경) 신청서(기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 반납)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자본감소변경등기부등본 등 양도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감자후등기부등본, 주총결의서 또는 이사회결의서) 사본
- 기타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대리신고 시 위임장

2-2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사업 영위 또는 다른 국내기업주식의 취득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자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단, 제한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외국투자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는 제외)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2-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출자목적물을 가장 납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 장관(또는 수탁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 등록말소 사유(「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4항)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모든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한 경우
3. 모든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 주식 등의 전부를 자본 감소한 경우
4.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경우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변경) 신청서 1부
- 등록말소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청산등기부등본, 폐업증명원, 주식 등의 양수도계약서, 감자결의서 등)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원본 반납

2-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 통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또는 수탁기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별지 제18호의2 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회수).

3장 법인설립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1. 외국인의 국내 진출방법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은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과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사 비교

1-1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구분	진출형태	적용법	비고
1	현지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
2	지점	외국환거래법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 분류
3	연락사무소		

1-2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사 비교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내 「상법」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그리고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단독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2012년 1월, 법원은 단독 외국인개인사업자를 외투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0구합4034).
- 법무부는 내국인과의 합작이 아닌 단독 외국인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투자 비자인 D-8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며, 법무부 지침에 따라 투자금액이 3억 원 이상 시에만 무역경영비자인 D-9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외국법인의 지사설치는 영업활동 유무에 따라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구분됩니다.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국내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登記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점 비교>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회계·결산이 독립적임)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 (회계·결산이 동일체임)
신고수리, 허가기관	KOTRA(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기획재정부 (증권, 보험업무 등)
최소(최대) 투자금액	최소 건당 1억 원, 최대 한도 없음	투자요구 금액 없음
납세의무의 범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좌측과 동일 일부 국가 지점세 추가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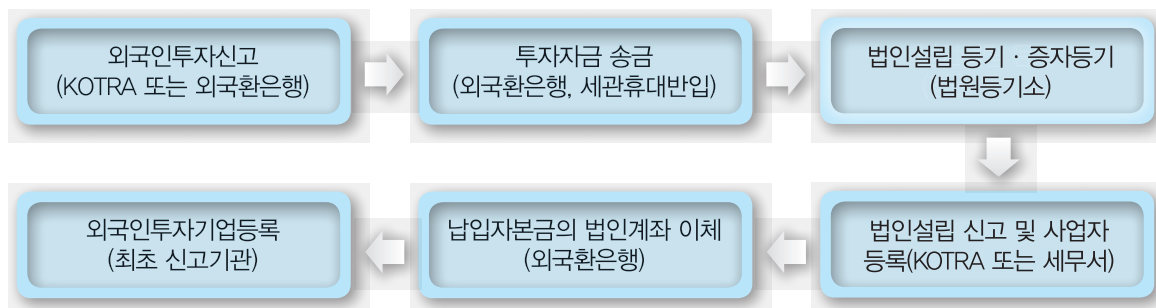
2. 현지법인 설립

외국투자자가 국내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현지법인 설립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설립 후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현지법인 설립절차
- 주식회사 설립절차

2-1 현지법인 설립절차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중요한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2 주식회사 설립절차

「상법」상 인정되는 회사의 형태는 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주식회사 등 5가지이나 주식회사의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1) 주식회사 설립유형

우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2)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발기인 구성과 동일상호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상호는 등기가 불가하므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www.iros.go.kr)에서 동일상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첨부 서면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15. 외국인투자신고필증
2. 정관(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16. 임원취임승낙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① 내국인: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첨부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② 외국인: 서명이 공증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17. 인감신고서(서명공증)*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기간단축시)	18. 주민등록등본(주소증명서) *
7.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회의사록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19.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8. 이사회이사록(공증의무는 전항과 동일)	20.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9.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잔고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음)	21. 대법원 수입증지
10.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2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1. 재산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	23. 법인인감도장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2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 11, 12, 13, 14번 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14. 감사인조사보고서 등본	

* 16,17,18을 외국에서 공증 받은 경우,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경우에는 영사관의 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의 제출서류 준비

투자자가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본과 대만 투자자인 경우는 한국의 개인, 법인이 준비하는 서류와 동일합니다.

< 개인투자자의 준비서류 >

법인 인감신고서	법인 인감신고서의 개인 인감날인란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후 공증(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에 취임하는 전원 • 한국/일본/대만: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취임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	취임승낙서에 첨부 • 한국/일본/대만: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표 • 그 외 국가: 해당 국가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 (단, 대표이사 아닌 이사, 감사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위임장	외국인투자신고 업무 등을 위임할 경우 • 일본/대만: 위임장에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위임장에 서명 후 공증
여권사본	모든 외국인

< 법인투자자의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자인 법인)	• 대만/일본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 • 그 외 국가: 해당국가의 법인증명서면 또는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공증서
법인 인감신고서 (설립되는 법인)	법인 인감신고서의 개인 인감날인란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후 공증(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에 취임하는 전원 • 한국/일본/대만: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취임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	취임승낙서에 첨부 • 한국/일본/대만: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표 • 그 외 국가: 해당 국가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 (단, 대표이사 아닌 이사, 감사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위임장	외국인투자신고 업무 등을 위임할 경우 • 일본/대만: 위임장에 법인 인감날인 후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그 외 국가: 위임장에 투자법인 대표이사의 서명 후 공증
여권사본	모든 외국인

(3) 주식회사 설립비용

주식회사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등록세 ·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회사설립비용 사례(자본금 1억 원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항목	세부내역	비용
등록세	자본금의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시 3배 증가	1,200,000원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240,000원
대법원 수입증지	등기신청 수수료	30,000원
공증료	정관 등(10억 원 이하 발기설립의 경우 일부 서류 공증 면제)	약 1,000,000원
합계		약 2,470,000원

* 기타, 법무사 또는 변호사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본점 소재지 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와 KOTRA 투자종합상담실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외국환매입증명서(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해당 시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
 - 대리인을 통한 신청일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 가정용 및 차량용 연료 관련업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형장소 영위자)

만약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 통관 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투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현물출자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발기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 사업허가 신청서(인·허가 사업인 경우)
 - 사업계획서
- ※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며, 회사 설립 후에 기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3.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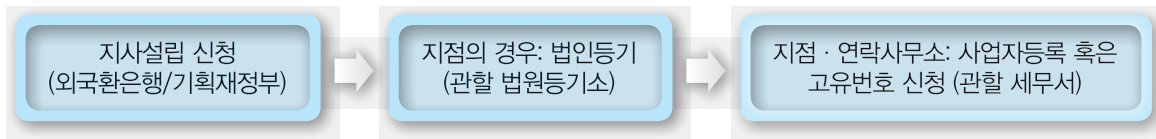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의 외국인투자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외국법인 국내지사 유형
-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3-1 외국법인 국내지사 유형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3-2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1) 지사설치 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 국내지사장 임명장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사본인 경우에는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 본사의 정관
-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지사설치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점 및 사무소 공통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2) 지사설치 등기

「상법」에 의하면, 지점의 경우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사본인 경우에는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 본사의 정관
-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지사설치업무 타인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외국회사 한국영업소 대표자 인감등록신청서(대표자의 법률행위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임의적 사항임)
- 지점 대표의 취임승낙서, 서명공증, 주소지 증명

※ 위 각호의 서류는 외국에서 공증을 받고,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경우에는 영사관의 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폐쇄 및 청산대금 회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내 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폐쇄신고 제출서류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신청인 선임 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
- 폐쇄 입증 서류(본사 발행)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

대금회수 제출서류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사본
-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폐쇄일 및 청산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관할세무서장 발급)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 예금잔액증명서(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고 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4장 투자인센티브

FDI Incentives

1. 조세 지원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관세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9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에서 법인세는 제외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2 및 제5장의3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금번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 대상 사업
- 조세감면 내용
- 조세감면 신청
- 감면조세의 추정
- 기타 조세지원

1-1 조세감면 대상 사업

(1) Type A

구분	투자요건 등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과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4)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 달러 이상일 것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 종전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으로 감면	• 제조업: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 시스템통합·관리, 자료처리 등: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 관광·휴양업: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 국제회의·청소년수련 시설: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SOC: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R&D 센터: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 공동사업: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2) Type B

구분	투자요건 등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제조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엔지니어링, 시스템통합·관리 등: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관광·휴양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국제회의·청소년수련 시설: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의료기관: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R&D 센터: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호 -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 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 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단지형) 입주기업	- 제조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2호	- 제조업 등: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R&D: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제1항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 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 제조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11개 분야)

- ①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 ② (지능정보)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스마트기기, IT융합
- ③ (차세대SW 및 보안) 기반SW, 융합보안
- ④ (콘텐츠) 실감형콘텐츠, 문화콘텐츠
- ⑤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지능형반도체·센서, 반도체등소재, OLED, 3D프린팅
- ⑥ (차세대방송통신) 5G이동통신, UHD
- ⑦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농수산·식품
- ⑧ (에너지신산업·환경) ESS,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원자력
- ⑨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초경량금속, 하이퍼플라스틱, 타이타늄
- ⑩ (로봇) 첨단제조로봇, 안전로봇, 의료 및 생활로봇, 로봇공통
- ⑪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우주

1-2 조세 감면 내용

(1) 법인세

2018년 12월 24일「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인해 2019년 1월 1일부터 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는 전면 폐지 되었습니다.

다만, 2018년 12월 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개정전 법령을 그대로 적용 받아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감면 받습니다.

Type A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7년간 감면(최초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년간 외국인투자비율의 50%만큼 감면)되고 Type B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가 감면(최초 3년간 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년간 외국인투자비율의 50%만큼 감면) 됩니다.

감면기산일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의 기준

-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증자의 경우에는 증자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며,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합니다. 유상감자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 전보다 순증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을 결정하고 증자 후 감자하는 경우에는 증자분이 우선 감자된 것으로 봅니다. 단, 순수 내국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위의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규 외국인투자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조세감면의 한도

감면기간 동안 감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아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의 금액

- 가. Type A 사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 나. Type B 사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1) + 2) + 3)의 금액
 -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 수 × 2천만 원
 - 2)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백만 원
 - 3) 기타 근로자 수 × 1천만 원
- 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40%(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 또는 30%(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

※ 외국인투자누계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장기차관은 제외)

(2)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대상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구 분	Type A 해당 사업	Type B 해당 사업
취득세 및 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감면 대상 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감면 대상 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상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감면내용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릅니다. 또한 과세대상 재산을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조세감면 결정을 받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관세 등 면제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의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관세 등을 면제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관세 등 면제는 외국인투자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Type A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Type B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세만을 면제합니다.

신청기관: 통관지 세관

제출서류

- 관세면제신청서
-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 현물출자 또는 현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세감면결정서)
- Invoice, B/L 또는 AWB, 가격신고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현물출자 완료확인

외국투자자가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 「상법」 규정에 따라 검사인이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가 현물로 출자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이러한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상업등기법」 제80조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가 현물로 출자되는 자본재를 도입한 후 관할법원에 자본등재를 하고자 할 경우 KOTRA에 파견된 관세청 파견관으로부터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 현물출자 완료확인 신청서 2부
- 수입신고필증

<자본재 통관절차>

절차	관련기관
투자신고	KOTRA 및 외국환은행 투자신고서 2부
▼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	최초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은행, KOTRA 확인대상: 관세면제대상자본재 신청서 3부, 가격증명서류(물품매도확약서, 계약서 등)
통관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필요 면제신청서(세관), 투자신고서 조세감면결정서, 송장,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B/L, Packing List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
▼	
현물출자완료확인	신청 및 확인기관: KOTRA 관세청 파견관 현물출자완료확인 신청서 수입신고필증
▼	
회사설립등기	등기소 등기신청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	
외투기업등록	최초 투자신고 장소 법인등기부등본, 현물출자완료확인서

1-3 조세감면 신청

(1)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전에 조세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이내에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전확인신청의 효과는 신성장동력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단순히 사전 확인하는 것으로 조세감면 결정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으므로 외국인투자 신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2) 조세감면 신청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자유무역지역 입주를 조세감면 요건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인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신청가능)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신규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이며,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신규투자 조세감면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 통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증자 분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 발생 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만 감면적용) 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하나,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0호 별표2)

조세감면(조세감면내용 변경,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시 첨부서류(제5조 관련)

- 당해기술에 대한 설명서(영어 등 외국어로 된 자료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
 - 그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 등 참고자료
-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재한 서류
-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기술에 한한다)
 - 전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 표시할 것
 - 공정별로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표시할 것
-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한 제품 서비스와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 서비스를 비교한 성능, 품질 또는 비용절감 등에 관한 사항
- 신성장동력산업 대상기술임을 증빙하는 다음의 자료
 -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 등에 대한 외국정부 기타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 등
 - 당해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료
 - 당해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 또는 소요기간 등)
 - 당해기술과 동종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3국에 투자한 실적과 이를 제3국에 공여한 실적
 - 기타 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조세감면결정내용 공문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신성장동력산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임을 증빙하는 다음의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5항)
 -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하, 감면관련 사업)은 제품 전체 공정 중 신성장산업기술이 사용되는 감면공정을 제외한 비감면공정의 사업을 의미하며 감면대상 사업과 감면관련 사업의 생산방식 및 공정표 등의 자료

3) 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 당해 신청이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이 결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에 대해 비감면 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 20일 이내에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신청 세부절차 >

Step 1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7항 확인방법: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되어야만 신청 가능
▼		
Step 2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관련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수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02-3497-1967), 외국환은행(본·지점)
▼		
Step 3	조세감면신청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신청기간 ① 신규: 당해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 ② 증자: 신규에 준함 ③ 변경: 변경사유일로부터 2년 이내 구비서류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3부 • 조세감면신청서 3부(「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80호 서식)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증명자료 3부
▼		
Step 4	조세감면여부 결정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및 신청기술 관련 주무부 장관 결정방법: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기술의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기술자료가 부족하거나 관계부처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료 보완 요청 및 처리기간 연장 통보)
▼		
Step 5	조세감면 여부 결정통보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투자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감면세액의 추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제도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감면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감면된 세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 감면세액 추정내용 >

추징사유	대상조세	추징범위
등록말소 및 폐업 하는 경우	법인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말소·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관세: 3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감면기준에 미달	법인세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투자신고 후 5년 이내 (고용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에 출자목적물 납입 및 차관도입, 고용인원이 기준에 미달	법인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고용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신고내용 및 시정명령 불이행	법인세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소유주식을 대한민국국민 등에 양도	법인세	주식 등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감면 당시 외국투자가 소유주식 등에 대한 양도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급하여 3년내 감면세액 중 양도 후 외국투자자의 잔여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한 감면세액
	취득세, 재산세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주식양도비율
출자목적물의 신고 목적外 사용·처분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관세: 3년)이내에 신고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외국투자자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추징세액 = 주식 등의 비율의 미달일 전 5년 이내 감면한 세액 x 주식 등 미달비율

다만, 아래의 사유에 대해서는 추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자가 그 소유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기업이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 외국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등

1-5 기타 조세지원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나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와 같이 법에서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단, 동 사항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은 아래의 두 가지 과세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만 적용이 되며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19% 단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근무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근로소득의 100분의 19에 해당하는 단일세율 적용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며 소득세 관련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등 규정은 미적용됨. 또한 일몰조항이므로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적용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미정)
-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계속 적용하겠다는 의미)
-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단, 외국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본인 기본공제 외의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미적용)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 한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는 제도입니다.

* 특정한 거래: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제도이용의 효과

-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통해 세법해석 관련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기업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질의한 사실관계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이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요건

사업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포함)의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 가정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사항
-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되는 경우 등

신청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국세청장(법규과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 * 신청서식 다운로드: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링크 - 세법해석 사전답변]
- 신청은 사업자 본인이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지원

※ 참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2019년 중 중요한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동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적용시점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의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정해진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금지원제도 개요
- 현금지원 신청절차
- 현금지원 사후관리

2-1 현금지원제도 개요

(1) 지원대상

현금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아래 “소재·부품산업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이나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과급효과나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소재·부품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13	섬유제품 제조업; 제조업; 의복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 업종별로 아래 “현금 지원 대상 업종별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업종별 현금 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C	제조업	300명
B	광업	
F	건설업	
H	운수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A	농업, 임업 및 어업	200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K	금융 및 보험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명
P	교육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 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자의 요건 등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기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생산, 판매, 물류, 인사 등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인력 10인 이상, 1억 원 이상, 모기업 지분 50% 이상, 모기업 과거 5년 평균매출 3조 원 이상 혹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자산규모,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인정하는 기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원한도

현금지원 한도 산정은 중앙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상담당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간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한도 산정위원회에서 산출하며, 산정된 현금지원 한도 내에서 외국인과 투자유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국유, 공유 토지를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함으로써 임대료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신청사업기간까지 감면 받은 임대료를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과 현금지원은 같은 항목으로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지원금의 총액은 현금지원한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3) 재정자금 분담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자금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0:50(다만, 기술계 인턴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함)
-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 연구개발시설의 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동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법정 사용용도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받은 현금지원금을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2-2 현금지원 신청절차

(1) 협상 및 지원신청·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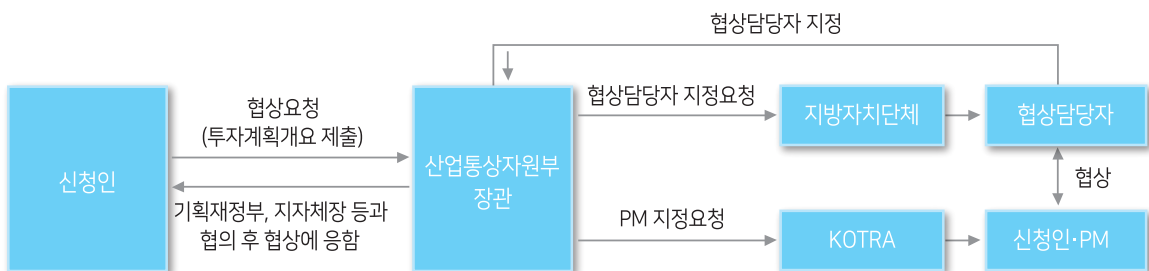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며, 재무적 평가 및 산업적 평가를 위하여 관련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이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현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현금지원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제출 전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상 또는 상담요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상담을 요청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담 또는 협상을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협상담당자)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상담당자 지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신청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프로젝트매니저 지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현금지원 평가기준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및 기술이전효과(기술성)
- 고용창출규모
-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산업성)
- 입지지역의 적정성
-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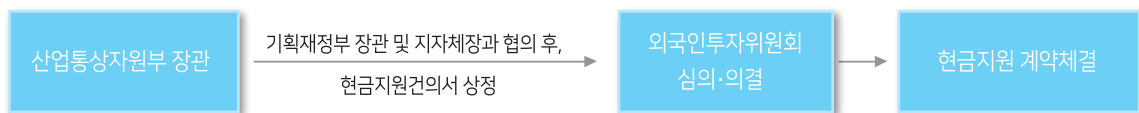
<협상 및 지원신청·평가>



(2) 지원결정 및 계약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지급액, 지급방식이 포함된 현금지원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을 결정하며, 지원은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됩니다. 다만, 입지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 및 계약체결>



(3) 제출서류

- 현금지원신청서(별지 서식)
-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각 5부
- 신청인의 재무제표 5부(증액투자의 경우 외투기업의 재무제표 포함)
-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자금제공확인서 사본 5부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기신고의 경우)
- PM 의견서 1부

※ 투자계획서 포함사항

- 신청인의 주요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 현황을 포함하고, 사업보고서 등 이용 가능한 관련자료 별도 제출)
- 총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금액
- 입지계획(지역, 규모, 취득 방식, 비용 등 포함)
-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계획(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
-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계획(내부조달, 외부조달, 현금지원 등으로 구분)
-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와의 구체적 사업관계 등 포함)
- 국내외 시장의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국내외의 예상 경쟁기업 현황 및 전망 포함)
- 투자기업의 10년간 사업성 전망(투자수익률, 순현재가치 등 구체적 투자수익성 자료와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사업 위험 및 재무위험 등에 대한 내용과 관리계획 포함)
- 향후 5년간 추정재무제표(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제 비용요소와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및 근거자료를 별도 제출)
- 향후 5년간 연도별 신규 고용계획 및 총괄표(이공계의 학력별 인원, 임금수준별 인원, 동종업계와의 평균임금수준 비교 등을 포함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및 내외국인 구분)
- 향후 5년간 연구개발 계획(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 설립 여부, 학력별 연구개발인력 규모, 연구개발투자 규모, 국내 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포함)

- 한국을 투자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대체 투자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 향후 5년간 지역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아시아지역본부기능 수행여부 등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4) 현금지원금 지급 및 지급기한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교부받은 현금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현금지원금 지급방법>

지급항목	지급방법
토지매입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
임대료	신청인과 임대토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투자기간 내 고용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 기타 현금지원의 지급방법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

사전심사제도는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KOTRA(Invest KOREA)에서 사전에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을 건의하여 현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적극적인 기획 투자유치 운영방식입니다. 지원신청을 받아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과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현금지원 여부는 신청서 접수 이전에 결정하게 됩니다.

KOTRA(Invest KOREA)는 현금지원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할 후보 프로젝트에 대하여 전문가 사전 검토를 거쳐 협상안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외국인투자위원회 상정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현금지원 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는데, 심의 후 1년 이내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상타결 이후 계약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기간 내에 협상 및 신청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련기술의 국내도입 및 개발현황 등을 감안하여 1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절차>

사전심사 투자계획서 접수	KOTRA
▼	
프로젝트 평가팀 구성 및 평가회의 개최	KOTRA(평가팀 - 산업부 - 지자체)
▼	
사전협상안 작성 및 평가결과 산업부 제출	KOTRA
▼	
외투위원회 상정 - 지원여부/한도 결정	산업부
▼	
세부협상 - 지원한도 내 세부사항 협의	산업부/지자체 - KOTRA - 투자기업
▼	
현금지원신청서 접수(본심사)	산업부 - 투자기업
▼	
산업부 - 기업 - 지자체 협의	산업부/지자체/투자기업
▼	
현금지원 계약체결	투자기업 - 산업부 - 지자체

2-3 현금지원 사후관리

(1) 신청인의 책무

신청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며,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와 투자지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건물, 시설, 장비 등 모든 자산(공사중인 자산 포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복구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보험 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금지원을 받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계약은 공개입찰, 공인 감정평가, 2개 이상의 견적서 징구 등 현금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현금지원을 받은 자산을 당해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금지원금은 배당 및 로열티 등으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년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는 결산보고서 외에 매년 연구개발 활동 현황 및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금지원금의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현금지원 계약기간 중 신청인의 투자지출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해야 하며, 신청인은 지급받은 현금지원금을 사용한 후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현금지원이 완료된 경우 당해연도의 사용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하게 됩니다.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3년 이내 해고 시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합니다(다만, 이공계 인턴사원 제외).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의 용도에 대한 현금지원은 현금지원계약서에 명시된 외국인투자금액(미 달러표시를 기준으로 함)보다 실제 외국인투자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적은 비율만큼 현금지원 금액을 감액 조정합니다.

현금지원 신청인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계약기간까지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주무부처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지지원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유치하기 위한 입지지원 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중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으로 분류됩니다.

외국인투자 입지제도는 지정목적에 따라 입주자격, 유치업종, 투자 인센티브(임대료, 조세, 관세, 현금)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장설립인가가 절차가 용이한 계획입지라 할지라도 투자입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투자 입지 지정현황 >

(2018.12.31 기준)

주요 입지 제도		지정지역	현황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천안, 대불, 사천, 오창, 구미, 장안1, 인주, 당동, 지사, 장안2, 달성, 오성, 천안5, 월전, 문막, 진천산수, 송산2, 국가식품(익산), 충주, 구미(부품), 포항(부품), 익산(부품), 창원(부품), 미음(부품), 송산 2-1, 광양세풍	26
	개별형	제조업(73개사), 물류업(2개사), 관광업(8개사), R&D(1개사)	84
	서비스형	서울(2), 대전(1)	3
경기도 외투기업 전용 임대지구		현곡, 포승, 추팔, 어연한산	4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형	울산, 동해, 군산, 김제, 대불, 울촌, 마산	7
	항만·공항형	부산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6
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 광양만권, 인천,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7

※ 새만금지역은 '18.4.6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해제 되었으나,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으로 계속 추진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중 '송산 2-2' 추가 지정(지정고시일: 2019.3.20)

- 외국인투자지역
- 소재·부품 전용공단
- 자유무역지역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투자 입지 인센티브

3-1 외국인투자지역(Foreign Investment Zone)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 투자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투자지역은 지정요건, 입주자격, 입주한도, 투자 인센티브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Complex-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토지 등을 소유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부지 공급이 필요한 외국인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저리로 임대할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단지형 외투자지역의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 이상으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업종(주로 제조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한도(입주계약 존속요건 중 하나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한 FDI(임차한 부지 가액의 1배 이상)의 투자와 '공장 설립 완료'는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공장건축면적은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한 부지면적 대비 12% 이상 되어야 합니다.

반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Individual-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맞춤형 입지로서, 외국투자가가 원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형 투자지역의 면적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로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Service-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연구개발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최저 투자금액은 임차한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00분의 100 이상, 건물건축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의 2배인 40%를 적용하며, 산업별 최소고용인원(5명~1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FDI, 건물건축면적, 최소고용인원)의 이행은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① 유치협상	(KOTRA, 지자체 ↔ 외국인투자가)
② 투자결정	(외국인투자기업 → KOTRA, 지자체)
③ 실무협의 및 개발계획 수립	(KOTRA, 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④ 외투자지역 지정요청	(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⑤ 외투자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⑥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⑦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⑧ 지정고시	(지방자치단체)

<단지형과 개별형 비교>

구 분	단지형 외투자지역	개별형 외투자지역
개 요	중소규모 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기존 산업단지에 일부 지정('94~)	대규모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심의 지정('97~)
위 치	산업단지(국가 및 일반)	제한 없음(희망지역)
지정(입주)요건	- 지정요건: 상기 참조 - 입주요건: 외국인투자지분율 이상·1억 원 이상	지정기준: 업종별 최소금액이상 투자시 심의 지정 (제조업 3천만 달러, 관광업 2천만 달러, 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 등)
입지지원	- 부지매입 후 임대지원 - 토지매입 국비 및 지방비 비율 - (수도권) 30:70, (비수도권) 60:40	- 부지매입 후 임대지원(요청시) - 토지매입 국비 및 지방비 비율 - (수도권) 30:70, (비수도권) 60:40
조세감면	감면요건 - 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	감면요건은 지정요건과 동일
	지방세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 이내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 이내 감면
	관세 자본재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자본재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부가가치세 해당없음	자본재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구 분	단지형 외투자지역	개별형 외투자지역
부지임대료 감면	• 1백만 달러 이상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10년간 100% 감면 • 5백만 달러 이상 제조업 75% 감면 (소재·부품 전용공단 내에서는 100%) • 250만 달러 이상 상시근로자수 200명 이상 제조업: 100% 감면 • 250만 달러 이상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 제조업: 90% 감면 • 250만 달러 이상 상시근로자수 70명 이상 제조업: 75% 감면	지정 및 임대 시 100% 감면
입주한도(FDI)	•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이행(이후 계속 유지) • 부지가액(공시지가)의 1배 이상 투자(FDI 기준) • 공장건축면적: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적용 (최소 12% 이상)	•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이행 (이후 계속 유지) • 업종별 최소투자금액 등 지정요건 충족 (부지가액의 2배 이상)

※ 외투자지역 부지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완료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1) 단지형 투자지역 지정 요건 및 현황

지정요건

- (신규지정요건)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100분의 60 이상, 최소규모 8만㎡ 이상
 - (수도권) 동일 광역지자체내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신규 또는 변경지정 제한
 - (비수도권)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단지면적대비 100분의 30 이상이고 명시적 입주수요가 단지면적대비 100분의 50 이상
- (기존지역 확장요건) 기 지정면적 대비 입주율이 80% 이상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확장대상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즉시입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60% 이상

입주자격 및 입주한도

- (입주자격)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단, 대불외국인투자지역 표준공장은 10%,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복합물류터미널사업) 및 나목(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은 5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
- (최소 투자금액) 공장부지가액(취득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의 1배 이상 투자금액을 5년 이내 유치해야 함
- (공장건축면적)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최소 12% 이상)을 적용하고 이를 5년 이내 완료해야 함

부지 임대료

관리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 간 입주계약 체결(매 10년마다 갱신 계약) 후 총 50년간 임대 가능

임대료 감면을(정상임대료를 대비)					정상임대료	현실임대료
100%		90%	75%		1%	5%
1백만 달러 이상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10년간 감면 후 투자금액 및 고용에 따라 감면)	250만 달러 이상 상시근로자수 200명 이상 제조업	250만 달러 이상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 제조업	5백만 달러 이상 제조업	250만 달러 이상 상시근로자수 70명 이상 제조업	입주계약 이행 기업에 적용	입주계약 미 이행기업, FIZ내 국내기 업(협력업체)

※ 5백만 달러 이상 제조업: 소재 · 부품 전용단지 100%, 산업단지 내 50% 감면

※※ 외투자지역 부지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완료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입주계약 시점의 현실임대료 기준 1년분을 징수하고 입주기업 요구 시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의 지급 보증서로 대체 가능.

사업계획의 이행

- 입주한도(외국인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는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사업계획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사업 계획 이행기간 후에도 입주자격(외국인투자지분율 30%, 1억 원 이상) 및 입주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함
- 입주자격 미달 시 현실임대료를 부과하고 불가피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현실임대료를 적용
-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현실 임대료를 적용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초과면적분에 대해 현실임대료를 적용
- 외국인투자금액 중 장기차관으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한 경우로서 장기차관의 상환으로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달될 때에는 현실임대료를 적용
- 공장건축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이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현실임대료를 적용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면적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초과면적분에 대해 현실임대료를 적용
- 사업계획을 이행치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반환할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입주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현실임대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감면 받은 임대료는 전액 환수함
- 분양 받은 산업용지는 분양계약 후 5년간 처분 제한, 10년 이내 처분 시 매각대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수
- 공장 등의 착공(「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1호)은 입주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착공해야 하며 공장설립은 5년 내에 완료해야 함

협력업체 입주제도

-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 가능
- 평가위원회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동의 하에 허용하며, 협력업체는 5년마다 갱신계약
- 임대료는 현실임대료(5%) 부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현황(2018.12.31 기준)>

연번	단지명	최초 지정일 (고시일)	임대면적 (천㎡)	입주면적 (천㎡)	임대 잔여면적 (천㎡)	입주기업수	임대료 (원/㎡-월)
1	천안(충남)	1994-10-13	491.38	491.38	-	42	310
2	대불(전남)	1998-08-29	1,170.58	1,121.08	49.50	30	69
3	사천(경남)	2001-08-17	495.19	495.19	-	16	224
4	구미(경북)	2002-11-06	332.36	207.92	124.44	11	165
5	오창(충북)	2003-11-28	446.26	446.26	-	11	223
6	장안1(경기)	2004-09-30	418.16	282.21	135.95	14	258
7	인주(충남)	2004-12-21	159.46	159.46	-	7	161
8	당동(경기)	2005-09-12	239.46	239.46	-	6	383
9	지사(부산)	2005-11-30	297.07	239.53	57.54	10	438
10	장안2(경기)	2006-12-26	368.98	227.63	141.34	7	303
11	달성(대구)	2008-09-10	104.19	104.19	-	6	218
12	구미부품(경북)	2009-03-09	246.34	174.89	71.45	7	151
13	오성(경기)	2009-09-03	353.93	169.10	184.83	7	323
14	포항(부품)	2009-09-03	264.93	221.16	43.78	4	127
15	익산(부품)	2010-03-12	319.40	124.94	194.46	3	103
16	창원남문(부품)	2010-10-14	71.27	40.48	30.79	3	451
17	미음(부품)	2011-12-28	299.58	164.28	135.31	6	425
18	천안5(충남)	2012-12-21	336.60	309.29	27.31	15	207
19	월전(광주)	2013-05-15	99.06	99.06	-	5	(1차)190/(2차)250
20	문막(강원)	2013-12-10	95.83	45.39	50.44	3	249
21	진천산수(충북)	2014-08-20	108.40	108.40	-	3	144
22	송산2(충남)	2015-10-12	134.02	99.95	34.07	2	290
23	국가식품(전북)	2015-10-12	116.00	23.13	92.87	1	126
24	충주(충북)	2016-07-18	334.70	219.84	114.85	2	160
25	송산2-1(충남)	2017-01-31	165.31	91.35	73.96	2	290
26	광양세풍(전남)	2017-11-02	82.64	82.63	0.01	1	248

(2) 개별형 투자지역 지정 기준 및 현황

- 지정절차: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맞춤형 입지로서 업종별 지정기준 충족 시,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정계획을 기초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합니다.

- 지정기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외국인투자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개별형 투자지역은 지정 신청 전에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업종 및 기준>

업종	지정기준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기술	FDI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FDI 2천만 달러 이상 (관광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 등)
물류업, 사회기반시설조성사업	FDI 1천만 달러 이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연구개발시설	FDI 2백만 달러 이상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의 연구개발시설 - 석사 이상 연구경력 3년 이상 인력 10인 이상 고용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현황(2018.12.31 기준)>

연번	사업장명	위치	면적 (천㎡)	최초 지정일	연번	사업장명	위치	면적 (천㎡)	최초 지정일
1	(주)한국대양유전	경남 사천	171.65	1999-10-22	43	대구텍 유회회사	대구	57.81	2011-08-01
2	한국제이에스티(주)	경남 양산	20.25	2000-03-14	44	에스에스엘엠(주)	대구	110.40	2011-08-01
3	코리아오토글라스(주)	세종	190.47	2000-12-30	45	한국유미코아신소재(유)	충남 천안	31.71	2011-12-20
4	한국바스프(주)_전남 여수	전남 여수	591.67	2000-12-30	46	동서석유화학(주)	울산	28.68	2011-12-22
5	한국BASF(주)_전북 군산	전북 군산	6.50	2001-01-12	47	에어프로덕츠코리아(주)_충남 아산	충남 아산	7.71	2012-03-12
6	(주)동부하이텍	충북 음성	137.22	2001-06-29	48	굴드퍼프(주)	충북 청주	46.99	2012-09-21
7	동우화인켐(주)_경기 평택	경기 평택	252.33	2003-12-29	49	동우화인켐(주)_전북 익산	전북 익산	38.67	2012-09-28
8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	경북 구미	341.12	2004-12-21	50	에이에스에이코리아(주)	경기 파주	27.43	2012-09-28
9	한국엠씨씨로지스틱스(주)	부산	67.86	2004-12-23	51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유)	충남 아산	143.03	2012-10-02
10	도레이첨단소재(주) 3공장	경북 구미	191.38	2004-12-27	52	아드반테스트코리아(주)	충남 천안	39.61	2012-10-02
11	아반트레이트코리아(주)	경기 평택	88.77	2004-12-30	53	현대헬베이스오일(주)	충남 서산	19.00	2012-10-02
12	한국호아전자(주)	경기 평택	18.64	2004-12-30	54	닛소남해아그로(주)	전남 여수	8.03	2012-10-05
13	린텍코리아(주)	충북 청주	49.60	2004-12-31	55	울산아로마틱스(주)	울산	168.39	2012-10-11
14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주)	충북 청주	164.77	2005-05-27	56	백통신원(주)	제주 서귀포	348.90	2013-10-08
15	(주)린데코리아	경기 용인	24.37	2005-11-28	57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	전남 여수	140.43	2013-12-12
16	프락스 에어코리아(주)_경기	경기 용인	48.61	2005-11-28	58	도레이첨단소재(주)_전북 군산	전북 군산	214.95	2013-12-13
17	한국유에스지보랄(주)	충남 당진	17.82	2006-12-26	59	에어프로덕츠코리아(주)_경기 화성	경기 화성	5.89	2013-12-20
18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주)	경북 구미	63.89	2006-12-28	60	한국니트옵티컬(주)	경기 평택	13.19	2013-12-24
19	버숨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유)	울산	30.61	2006-12-28	61	레고랜드코리아(유)	강원 춘천	281.07	2014-04-29
20	롯데엠시(주)_충남	충남 서산	66.62	2007-04-30	62	이니츠(주)	울산	22.15	2014-06-26
21	스텐포드호텔코리아(주)_서울	서울	3.43	2007-05-17	63	엔알지(주)	충남 예산	24.29	2014-06-30
22	일상해양산업(주)	전남 여수	116.36	2007-11-20	64	에스케이어드밴스드(주)	울산	104.42	2014-11-13
23	한국쓰리엠하이테크(유)	전남 나주	5.53	2007-12-27	65	도레이첨단소재(주)4공장	경북 구미	269.66	2014-12-01
24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유)	경북 구미	228.74	2008-03-31	66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주)	전남 여수	41.03	2015-04-09
25	프렉스 에어코리아(주)_충남 아산	충남 아산	15.83	2008-07-28	67	타이코에이엠피(주)	경북 경산	81.27	2015-11-30
26	파워카본테크놀로지(주)	경북 구미	74.50	2008-12-18	68	에이에스엠케이(주)	경기 화성	7.20	2015-12-03
27	다논코리아(유)	전북 무주	119.94	2009-02-27	69	람정제주개발(주)	제주 서귀포	1,158.19	2015-12-04
28	이스트한화비어코리아(주)	울산	37.69	2009-09-03	70	에어프로덕츠코리아(주)_경기 평택	경기 평택	34.17	2015-12-21
29	서한엔티엔베어링(주)	경북 경주	86.57	2010-05-10	71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제주 서귀포	224.74	2015-12-30
30	에드워드코리아(주)	충남 천안	40.01	2010-09-30	72	한국유미코아신소재(유) II	충남 천안	83.19	2016-07-20
31	룸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	충남 천안	50.07	2010-09-30	73	쿠라레코리아(유)	울산	6.50	2016-07-21
32	온세미컨덕터코리아(주)	경기 부천	6.58	2010-12-29	74	스텐포드호텔앤리조트(주)_경남통영	경남 통영	16.85	2016-07-21
33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전남 여수	349.79	2010-12-30	75	코오롱바스프이노폼(주)	경북 김천	27.32	2016-07-25
34	카길 애그리퓨리나	충남 당진	58.62	2010-12-30	76	에어프로덕츠코리아(주)_울산	울산	6.50	2016-12-22
35	카길 유자가공 유회회사	충남 당진	52.99	2010-12-30	77	(주)바커케미칼코리아	울산	6.94	2017-11-02
36	현대코스모(주)	충남 서산	177.44	2010-12-30	78	도레이비에스에프코팅한국(유)	충북 청주	13.00	2018-01-26

연번	사업장명	위치	면적 (천㎡)	최초 지정일	연번	사업장명	위치	면적 (천㎡)	최초 지정일
37	다우케미칼 오엘이디	충남 천안	39.52	2011-05-20	79	엠에스씨코리아(주)	충남 천안	9.55	2018-07-02
38	롯데엠시(주) 전남 여수	전남 여수	70.62	2011-05-20	80	에어리퀴드코리아(주)	전남 여수	15.24	2018-11-12
39	아반시스코리아(주)	충북 청주	145.31	2011-05-20	81	아쿠아월드	부산	38.92	2018-12-14
40	한국물렉스(유)	경기 안산	13.93	2011-05-26	82	한국메티스특수가스(주)	충남 아산	10.70	2018-12-20
41	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주)	경기 의왕	20.59	2011-07-20	83	아이엠씨엔드밀(유)	대구	58.25	2018-12-20
42	태평양에어콘트롤공업(주)	충남 아산	26.94	2011-07-20	84	에스엔에프코리아(주)	울산	27.95	2018-12-20

(3) 서비스형 투자지역

- 도입 배경: 공장용지를 저가로 임대 공급하는 제조업 중심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건물 수요가 높은 연구개발 및 서비스업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산업단지 내 및 이외의 지역(건물 포함)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지정요건: 신규 및 추가 지정 지역(부지) 또는 건물은 즉시 입주가 가능해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 된 입주수요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국·공유 재산(건물 포함)의 일정공간을 선지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고 된 입주수요가 지정면적 대비 30%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업종 및 조건>

구분	세부업종	고용기준	사업계획조건(FDI)
연구개발업	자연공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1, 7012)	연구전담인력 5인 이상	임차면적에 해당하는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00% 이상 투자
금융 및 보험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15인 이상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으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별표1이 정하는 산업		
관광사업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제외)으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별표2가 정하는 산업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현황(2018.12.31 기준)>

연번	사업장명	위치	면적(천㎡)	최초 지정일
1	IDS-K	대전 유성	347.99	2015-11-20
2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	서울 마포	3,624.50	2017-04-20
3	에이바이오텍	서울 마포	779.6	2018-12-27

3-2 소재·부품 전용공단(Material and Part Complex)

(1) 도입 배경

소재·부품 전용공단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중 첨단 소재·부품 기업들의 입지에 특화된 산업단지입니다. 한국의 대형 수요기업에 근접하고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입지를 고려하여 구미시, 포항시, 익산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전용공단을 지정하여 소재·부품 전문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 소재·부품 전용공단 지정현황 >

공단	구미	포항	익산	창원	부산미음
지정일	'09.03.09.	'09.09.03.	'10.03.12.	'10.10.14.	'11.12.28.
조성면적(천㎡)	246.3	327.2	319.4	71.3	299.6
유치산업	디스플레이, 모바일, 전자 등 부품소재업종	철강, 조선부품, 소재 등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 화학 등	자동차, 기계장비, 전기전자 화학분야 등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7개 업종

출처: 소재·부품 전용공단 홈페이지 (www.pmcocomplex.go.kr)

※ 소재·부품 전용공단은 입주업종으로 「소재·부품 전문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의 소재·부품 업종에 입주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주한도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부지면적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투자 인센티브

	요건	내용
조세감면	제조업: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투자금액 500만 달러 이상	지방세 감면: 최장 15년 이내 100%
임대료감면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투자금액 500만 달러 이상 소재부품제조업	임대료 감면: 100%

3-3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제조 및 물류업 영위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출목적의 제조업, 창고·물류·하역·포장 등의 물류업, 수출입거래를 위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18.7.)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 예정

입주자격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국내복귀기업 포함)
-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제조업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등 물류업을 영위하는 기업
- 금융·통관·정보처리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

(1) 인센티브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세감면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2백만달러 • 제조업: 1천만 달러 • 물류업: 5백만 달러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최장 15년간 100% 감면
관세특례	•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건축자재, 기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비관세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은 관세 면제 또는 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간에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	
임대료 감면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장 부지 및 표준공장 임대료 10년간 감면 - 1백만 달러 이상 신규투자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에 속하는 사업 100% 감면 - 5백만 달러 이상 신규 투자 부품소재산업: 100% 감면 - 5백만 달러 이상 신규 투자 제조업: 75% 감면	

(2) 지정현황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형과 공항·항만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형으로는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등 7개 지역, 공항·항만형으로는 인천공항과 부산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등 6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도 지정 가능합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2018.3.31. 기준)>

구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진	울산	김제
지정일	'07.1.1.	'00.10.6.	'02.11.21.	'05.12.12.	'02.12.12.	'08.12.8.	'09.1.6.
면적(천㎡)	957	1,256	1,157	248	344	819	991
입주업체(개)	113	28	34	17	14	35	25
입주율(%)	98.1	89.9	96.5	58.7	62.7	96.2	46.3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현황(2018.3.31. 기준)>

구분	항만형					공항형
	부산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지정일	'02.1.1.	'08.12.8.	'09.3.30.	'02.1.1.	'03.1.1.	'05.4.6.(1단계) '07.12.31.(2단계)
면적(천㎡)	9,364	840	1,429	8,880	1,837	3,050
입주업체(개)	67	3	15	47	1	664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3-4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 활동과 투자 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입니다.

또한 다양한 세제혜택,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편리한 생활환경과 간편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외국 교육기관·병원의 설립 및 운영, 외국어 서비스, 외국 화폐·방송 등의 허용,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과 같은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외투기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권, 충북 등에 지정하여 앞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 동북아 물류 중심지,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첨단 사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 입니다.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지정 해제(2018.4월) 후 따른 새만금사업(「새만금특별법」)으로 계속 추진

입주자격

- 외국인투자기업 /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등

(1) 지정현황

구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권	충북
위치	인천 (연수구, 중구, 서구)	부산(강서구), 경남(창원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경남(하동군)	대구, 경북 (경산, 영천, 포항)	경기(평택)	강원 (강릉, 동해)	충주
면적 (km ²)	123.47	51.06	69.5	18.93	4.39	4.81	4.88
공항항만	인천공항 인천항	김해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여수공항	대구국제공항	평택당진항	양양공항 동해항	청주공항
추진기간	2003-2022	2003-2023	2003-2022	2008-2022	2008-2020	2013-2024	2013-2020
사업지구	송도, 영종, 청라	신항만, 명지, 지사, 두동, 웅동	광양, 울촌, 신덕, 화양, 경도, 하동	대구, 영천, 경산, 포항	평택BIX, 현덕	북평, 망상, 옥계	바이오메디컬 바이오폴리스 에어로폴리스
유치산업	국제비즈니스, IT, BT, R&D, 항공, 물류, 관광, 금융, 레저, 첨단산업	부산신항 거점 물류, 국제업무 첨단부품소재 및 R&D 여가·휴양· 레저	물류, 제조, 철강, 기계, 조립, 금속, 신재생에너지, 관광, 레저	첨단수송부품 소재, 첨단메디 컬, IT융복합	자동차부품, 물류, 전자, 화학유통, 상업, 주거, 관광, 의료 등	첨단소재, 물류, 비즈니스 산업 의료·관광· 해양관광 등 명품관광산업 비철금속산업, 초경량첨단부 품소재산업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환경	IT, BT, 첨단업종 및 연구시설 항공운송, 물류, 비행훈련 시설 항공정비부품 제조, 항공교육 연구시설 의료연구개발 기관, 첨단임상 시험센터, 연구 병원

출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 (www.fez.go.kr)

(2) 인센티브

구분		조세구분		감면기간/감면율	감면요건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국세	관세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수입 자본재
		지방세	취득세	조례 의거 최장 15년간: 100%	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 의료기관: 5백만 달러 이상 R&D: 1백만 달러 이상
재정지원	현금지원	-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 최소 FDI의 5% 이상 지원 - 공장, 연구시설 설치비,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조건) 외투비율 3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중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규모 등 평가하여 결정			
	기반시설 지원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지원조건) 국비 50% 지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시 전액 지원			
	외국교육, 연구기관 지원	외국교육, 연구기관 설립 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 (지원조건) 명성도, 국가발전기여도 등 평가요소 충족			
	임대료	- 국·공유지에 대해 50년간(이후 50년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 임대 가능 -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1,000 수준			
기타지원	노동규제 완화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 무급휴가 허용 등			
	외환거래 자유	1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 당사자간 직접 지급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배제 - 과밀부담금,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 규제 배제			

출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 (www.fez.go.kr)

3-5 외국인투자 입지 인센티브

(1) 외국인투자 입지 지원제도 비교

구분	외국인투자지역(FIZ)		자유무역지역(FTZ)		경제자유구역(FEZ)	새만금
	단지형	개별형	산업단지형	공항, 항만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정 목적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		외자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	외자유치, 국제물류 기지 육성	외자유치, 국가경쟁력강화, 지역균형 발전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정 위치	산업단지內	제한 없음	항만, 공항의 주변 지역, 산업단지	항만, 공항,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	국제공항·항만 주변 지역	새만금사업지구
지역 특성	임대단지 운영 원칙	개별사업장 단위 지정	비관세지역		특별행정구역수준 (자치단체조합) * 2천만평 - 6천만평	산업용지는 FEZ와 동일
지정 권자	시·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위원회 의결
관리 권자	-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관리기관 - 그 외: 시·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항만형) 해양수산부 장관 (공항형)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자유구역청장	새만금개발청장

구분	외국인투자지역(FIZ)		자유무역지역(FTZ)		경제자유구역(FEZ)	세만금
	단지형	개별형	산업단지형	공항, 항만		
입주 자격	외국인투자금액 1억원 ↑, 외투자 분 30% ↑ • 제조업, 물류업 등 • 계약후 5년내 임대부지가액 1배 이상의 FDI 조건	외투기업&FDI 조건 • 제조업: 3천만 달러 ↑ • 관광업: 2천만 달러 ↑ • 물류업: 1천만 달러 ↑ • R&D: 2백만 달러 ↑ (3년 ↑ 석사 10인)	• 수출주목적 제조업 기업 •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기업 • 수출입거래 주목적 도매업 • 복합물류관련사업		• 외투기업 •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등	국내기업 및 외투기업
조세 감면 요건	• 제조업: 1천만 달러 ↑ • 물류업: 5백만 달러 ↑	위 지정요건과 동일	• 제조업: 1천만 달러 ↑ • 물류업: 5백만 달러 ↑		• 제조, 관광: 1천만 달러 ↑ • 물류, 의료기관: 5백만 달러 ↑ • R&D: 1백만 달러 ↑	• 제조, 관광: 1천만 달러 ↑ • 물류, 의료기관: 5백만 달러 ↑ • R&D: 1백만 달러 ↑
감면 대상 조세	지방세: 15년 범위 내	지방세: 15년 범위 내	지방세: 15년 범위 내 조례로 조정		지방세: 15년 범위 내	지방세: 8년 (새만금위원회 의결시 10년)
관세 감면	자본재 투자신고 일로부터 5년간 면제	관세유보(수입 물품, 자본재)	자본재 5년간 면제		자본재 5년간 면제	
임대료	부지가액 10/1,000수준 (관리기본계획 명시)		부지가액 10/1,000수준 (기재부 협의 후 관리권자 결정)		부지가액 10/1,000수준 (관리청 결정)	재산가액 1% ↑ (외투기업)
임대료 감면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1백만 달러 ↑: 100%(10년) • 일반제조&5백만 달러 ↑: 75% 감면 (소재 · 부품전용 공단은 100%) • 250만달러↑&상 시근로자 200명 ↑ 제조업: 100% 감면 • 250만 달러 ↑ &상시근로자 150명 ↑ 제조업: 90% 감면 • 250만 달러 ↑ &상시근로자 70명 ↑ 제조업: 75% 감면	국공유지일 경우 100% 감면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장 부지 및 표준공장 임대료 10년간 면제 • 1백만불 이상 신규투자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사업: 100% 감면 • 5백만불 이상 신규 투자 부품소재산업: 100% 감면 • 5백만불 이상 신규 투자 제조업: 75% 감면		조례 등에 따라 관리청 결정 (50%~100%)	군산시 조례로 임대료감면 (100% or 75%) 규정

(2) 조세감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감면 투자요건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조례에 의거 최장 15년 범위 내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2백만 달러 • 투자지역 - 제조업: 3천만 달러 - 관광업: 2천만 달러 - 물류업: 1천만 달러 - R&D: 2백만 달러&석사10인 이상 고용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 제조업: 1천만 달러 • 관광업: 1천만 달러 • 물류업: 5백만 달러 • R&D: 1백만 달러 ※ 기업도시: 1천만 달러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FDI 3천만 달러 이상 또는 외투 50% 이상으로, 총 사업비 5억 달러 이상

(3) 관세 등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대상기간	대상자본재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 개별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 각 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5년 내 수입신고완료 대상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 반입외 국물품에 대한 관세가 유보되며, 반입 내 국물품에 대한 관세는 환급
•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관세		

(4) 재정(입지) 지원

1) 지원개요

관련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지원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당해 지원을 통해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금액(FDI)의 50% 범위 내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외국인투자금액은 25% 수준 이상 유지)의 25% 범위 내

2)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i) 임대용지 지원	① 용지매입	•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 및 매입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 • 매입비 분담 - 수도권(국가 30%, 지자체 70%) - 비수도권(국가 60%, 지자체 40%)		
	②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 50년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	감면 대상	감면내용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100% 감면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 1백만 달러 이상	단지형 투자지역	100%
			산업단지	50%
		일반 제조업 & 5백만 달러 이상	단지형 투자지역	75%
			산업단지	50%
소재 · 부품기업& 5백만 달러 이상	단지형 외투자지역(소재부품형)	100%		
※ 토지 소유권을 국가·지자체(광역)가 공유로 보유하는 경우 각 소유 비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규정 달리 적용(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				
(ii) 분양가 차액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의 조성원가 이하 분양 시 차액 보조 -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차등			
(iii) 임대료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 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			

※ 외투자지역 부지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완료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5) 기타 지원내용

-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 지정 및 운영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현금 지원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면제
-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프로젝트매니저란?

정부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프로젝트매니저를 KOTRA 사장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매니저의 자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직원,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PM교육 이수 시 주어집니다.

프로젝트매니저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제공 및 면담의 알선에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지원과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지원에 이르는 모든 제반 업무를 지원합니다.

PART
II

기업경영정보

1장 비자 및 체류

Visa and Stay in Korea

1. 사증(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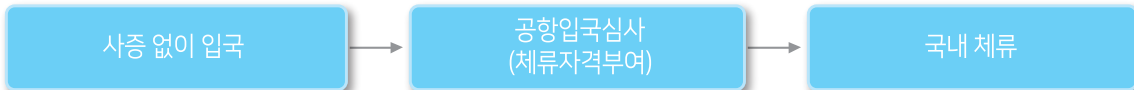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미리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하며, 사증은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 보다는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로 통상 소지여권에 스티커(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명시)로 발급됩니다.

- 입국방법
- 기업투자(D-8)사증
- 동반(F-3)사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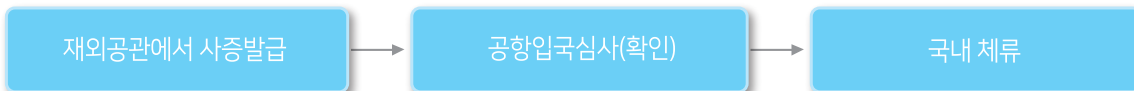
1-1 입국방법

외국인의 입국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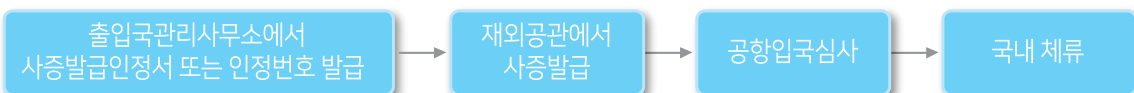
- 사증 없이 입국하여 출입국 공관에서 입국심사 시 체류자격 및 기간을 부여 받아 입국하는 방법



-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법



-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초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방법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제10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체류자격은 활동범위에 따라 36개로 분류되며, 투자외국인 및 투자법인의 필수전문인력은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됩니다.

국내체류는 90일을 기준으로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구별하며,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장기체류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단기체류 사증발급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재외공관에서

신속히 발급되나, 위임되지 않은 장기사증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외공관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F-3)에 대한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기업투자(D-8)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1-2 기업투자(D-8)사증

(1) 대상

기업투자(D-8)사증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됩니다. 단, 국내에서 채용하는 외국인은 필수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 제공자도 제외됩니다.

필수전문인력

임원(Executive)

조직 내에서 조직관리를 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와 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 지휘, 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 감독, 통제하거나 일상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따 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 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전문기술자(Specialist)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 설계, 기술, 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2) 발급신청방법 및 절차

기업투자(D-8)사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장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기업투자(D-8)사증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사증발급 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국내에 있는 초청인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이를 피초청인에게 전달, 피초청인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동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로 사증발급을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 없이 입국하거나 단기사증을 받아 입국한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서 체류자격변경 허가 등을 신청

기업투자(D-8-1)사증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사증발급신청시에는 여권사본),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 발행)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 ※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행이 원칙. 지사에서 파견이 되는 경우에도 파견명령서는 외투기업등록증명서상의 투자자 즉, 본사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파견 기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 주재활동의 경우 재직증명서(본사 발행)
- 필수 전문인력 입증 서류: 자격증(기술자), 경력증명서, 조직도, 학위증 중에서 택일
- 법인 납세사실증명(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등 포함)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인 경우
 -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 세관 수입신고필증
- 투자금액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 * 국내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 법인통장 및 입출금내역서
 - 사업장존재 입증서류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수수료(수입인지): 상호주의 등 원칙에 따라 국가별 상이하므로 재외공관에 문의
 ※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3 동반(F-3)사증

동반(F-3)사증은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가 발급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장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동반(F-3)사증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사증발급 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국내에 있는 초청인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이를 피초청인에게 전달, 피초청인이 재외공관에 가서 동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로 사증발급을 신청
- 가사정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 없이 입국하거나 단기사증을 받아 입국한 경우, 투자종합상담실(KOTRA) 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 허가 등을 신청

동반(F-3)사증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여권사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호적등본 등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수입인지): 상호주의 등 원칙에 따라 국가별 상이하므로 재외공관에 문의
 ※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체류

외국인은 허가 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대상자로 외국인등록신청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신청서에 체류자격별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체류 도중 기존의 외국인등록사항, 체류자격, 체류기간, 근무처, 체류지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연장
- 재입국허가
- 체류지변경신고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 자격외활동허가
- 근무처변경 추가허가

2-1 체류자격변경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투자(D-8)사증을 발급 받지 못하고 단기사증(C-3) 또는 사증 없이 입국(B-1, B-2)한 사람과 그 동반가족 또는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동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투자자 및 그 동반가족은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허가기간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기업투자(D-8)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종합(C-3)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단체관광객 중에서 순수관광목적(C-3-2), 의료관광(C-3-3), 산업연수(D-3), 비 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 변경 불허.]

체류자격변경(D-8-1)허가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 발행)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행이 원칙. 지사에서 파견이 되는 경우에도 파견명령서는 외투기업등록증명서상의 투자자. 즉, 본사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파견 기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 주재활동의 경우 재직증명서(본사 발행)
- 필수 전문인력 입증서류: 자격증(기술자), 경력증명서, 조직도, 학위증 등에서 택일
- 법인 납세사실증명(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등 포함)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인 경우
 - * 현물출자원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 투자금액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비용 등
 - * 법인통장 및 입출금내역서 등
 - 사업장존재 입증서류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영업실적 서류
 - *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 *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 *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통장 등 국내계좌입출금내역서)
 - * 사업계획서(투자금 사용내역, 향후 사업계획)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 기업투자(D-8)자격변경허가 수수료 면제

2-2 외국인등록

외국인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사증으로 입국하여 기업투자(D-8)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동시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만17세 이상 외국인은 등록 시 본인여부 확인 및 지문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투자가 또는 임직원이 외국인투자기업 근무를 마치고 완전히 출국할 때에는 출국하는 공항, 항만 출국심사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D-8)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자격을 직접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때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용하여 제출함(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은 생략). 단,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수수료 면제

2-3 체류기간 연장

기업투자(D-8)소지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하며,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면 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에는 투자기업의 규모, 투자금액, 영업실적 등에 따라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을 부여하고, 외국투자가로서 사업 활동 또는 파견근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 활동 사실이 없으면 횟수에 제한 없이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D-8-1)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 발행)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필요함)
- 법인 납세사실증명(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등 포함)
- 체류지 입증서류(체류기간만료안내통지문, 공과금납부 영수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중에서 택일)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인 경우
 -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 투자금액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비용 등
 - * 법인통장 및 거래내역서 등
 - 사업장존재 입증서류
 - *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세금체납이 없다는 납세증명서
 - 영업실적 서류
 - *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 *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 *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통장 등 국내계좌입출금내역서)
 - * 사업계획서(투자금 사용내역, 향후 사업계획)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수수료 면제

2-4 재입국허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일시 출국하였다가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단수(Single) 또는 복수(Multiple) 재입국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국 당일 공향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는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허가기간, 재입국허가기간(단수: 1년, 복수: 2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시행규칙 제44조의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0.11.16.>
1.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2.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10. 문화예술(D-1)부터 28. 동반(F-3)까지, 28의4. 결혼이민(F-6)부터 31. 방문취업(H-2)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D-8 소지자 포함)

재입국허가 면제국가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C-2, D-7, D-8, D-9 체류자격소지자)

재입국 허가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통합양식)
- 수수료(전자수입인지 등): 단수(3만 원), 복수(5만 원)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수수료 면제

2-5 체류지 변경신고

기업투자(D-8)소지자의 경우,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사람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투자종합상담실(KOTRA), 또는 새로운 체류지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벌칙금)을 받습니다.

체류지변경 신고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2-6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

기업투자(D-8)소지자로서 다음 신고사유가 발생한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기업투자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이나 추가된 경우

만약 등록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처벌(과태료)을 받습니다.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변경사항 입증서류

2-7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업투자(D-8)소지자로서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계열 회사내 주재(D-7)자격이나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필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은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격 외 활동(D-8-1)허가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파견명령서(본사발행)
- 원 근무처와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 신고(허가) 관련 서류(지사 설치허가서 등)
- 원 근무처 장의 추천서
- 영업실적증명 서류: 법인납세사실증명서 등
- 수수료(전자수입인지 등 12만 원)

동 제출서류는 투자종합상담실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 자격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시에 한하며, 기타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관련 제출 서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8 동일계열회사 내에서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 신고

기업투자(D-8)소지자의 경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가 변경되거나 추가되었을 때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신고를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는 같은 계열회사 내의 근무처 변경 및 추가에 한합니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D-8-1)신고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파견명령서
- 추가·변경 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
- 추가·변경 근무처의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 추가·변경 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추가·변경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 추가·변경 근무처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동일계열사 입증서류
- 수수료(전자수입인지 등): 없음

3. 투자외국인 우대제도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출입국과 체류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규모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운영하기도 하고, 조건에 부합될 경우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KOTRA 투자종합상담실은 투자컨설팅에서 체류의 애로사항 해결 등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주(F-5)자격 변경
-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 허용
- 외국투자가 전용 출입국심사대 운영
- 자동(무인)출입국 심사대 운영
-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 외국투자자의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 체류신청 시 부여기간의 상한 확대

3-1 영주(F-5)자격 변경

2018.9.21.부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주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외국인과 관련된 제도와 규정이 크게 변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

- 앞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영주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일정 기한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①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②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 이 법 시행으로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의 사망, 체류지 변경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해외 사례)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일본은 7년, 캐나다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연도별 영주(F-5)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월말
전체 체류외국인(명)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2,128,404
영주자격 체류외국인(명)	100,171	112,742	123,255	130,237	136,334	136,577
영주자격 외국인 비율(%)	6.4	6.3	6.5	6.4	6.3	6.4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체계화하고, 영주자격 취득요건 등을 규정

-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분류 ▲일반체류자격을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 ▲영주자격의 법적지위 및 취득요건*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 * 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이는 종전에 대통령령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킨 것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들에게는 국내 체류에 따른 법적 지위를 명확히 알려주고, 정부의 외국인 관리체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영주자격 취소사유*를 일반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보다 요건을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영주자격 외국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최근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③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외국투자자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원에게도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선을 개선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주자격은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업투자 (D-8)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영주자격 신청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투자자 본인만 영주자격 신청 대상임)로 국민을 5인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람
 -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중 사회·복지·고용 분야에 기여한 사람*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원(감사 또는 이사만 해당)으로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영주자격 부여.
- 단, 정규직으로 고용된 국민 10명당 1명의 임원에게 부여되며, 외국인투자기업당 최대 10명의 임원에 대해서만 영주자격 부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신분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됨으로써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 해제
- 2년 범위 내 재입국허가 신청의무 면제대상임
- 강제퇴거 제한 등

3-2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 허용

고액투자자의 국내체류 편의증진을 위하여 영어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가사보조인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보조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금액이 50만 달러 이상으로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외국투자가(대표 및 임직원)
- 단, 50만 달러 미만 투자자의 경우에는 첨단정보업종으로 내국인 상시 근로자를 3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한함

임직원의 범위

필수전문 인력의 범위 중 임원(executive) 및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첨단정보업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KOTRA(Contact Korea)가 정한 골드카드(Gold Card) 발급대상인 8개 첨단기술분야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전자상거래(IT포함)], 환경 및 에너지, 신소재

가사보조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20세 ~ 58세로 중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여야 하며, 초청자 1인당 가사보조인 고용은 1명으로 제한됩니다. 고용계약의 종료, 고용 해지, 고용인의 기업투자(D-8)자격 상실 등 가사보조인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출국해야 합니다.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 허용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사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청인의 초청자격과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장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사증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사증발급 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국내에 있는 초청인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이를 피초청인에게 전달, 피초청인이 재외공관에 가서 동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로 사증발급을 신청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사본,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사진 1장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 고용주의 연간 소득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서류(투자금액 50만 달러 미만인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 신분보증서
-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수입인지): 상호주의 등 원칙에 따라 국가별 상이하므로 재외공관에 문의

※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3 외국투자가 전용 출입국심사대 운영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와 그의 동반가족들의 인천공항 출입국 편의를 위하여 외국투자가 전용심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 투자가 자동(무인)출입국 심사대 운영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자동출입국심사등록센터)등 출입국공항에서 여권정보와 지문 및 얼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KOTRA 투자종합상담실(Investment Consulting Center)

외국투자자의 사증 및 체류 관련 편의를 위하여 KOTRA에서 투자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파견되어, 체류지 관할구역 제한 없이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 및 그의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한국출생 자녀의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업무, 체류지변경신고와 기업투자(D-8)체류자격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추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투자지원센터(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함)에서도 외국투자가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등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등의 체류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3-6 외국투자자의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체류허가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드립니다.

체류허가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3만 원(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체류기간연장허가	6만 원(전자수입인지 등)
체류자격변경허가	10만 원(전자수입인지 등)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12만 원(전자수입인지 등)
재입국허가	단수 3만 원(전자수입인지 등), 복수 5만 원(전자수입인지 등)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수수료(12만 원)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2천 원) 수수료는 내야합니다.

2장 인사·노무

Labor

1. 노동법

「노동법」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들을 총칭한 것을 말합니다.

- 배경 및 목적
- 구분 및 적용대상

1-1 배경 및 목적

한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 임금, 해고 등에 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노동법」은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기업활동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건강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습니다.

1-2 구분 및 적용대상

「노동법」은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협력적 노사관계법, 고용관련법의 4가지로 구분되며, 그 성격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대한 근로자의 단결을 보장하여 노사간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실현하며, 나아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분	법	근로자수	비고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	5인 이상	•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일부 조항 적용 •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작성의무
	최저임금법	전 사업장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산업안전 보건법	일 반	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0인 이상
		안전관리자의 선임	50인 이상
		보건관리자의 선임	50인 이상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100인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 사업장	5인 미만 농·임·어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집단적 노사관계법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 적용제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 사업장	
협력적 노사관계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0인 이상	• 노동조합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 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 위원을 둠

구분	법	근로자수	비고
고용관련법	고용보험법	전 사업장	5인 미만 농·임·어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0인 이상	•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하여야 함 • 미 이행 시 부담금 납부, 초과 고용 시 장려금 지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토록 노력하여야 함(제조업 2%, 운수업·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산업 3%)

2. 노무관리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수준이 법에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기준 이하의 내용이면 그 부분은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 임금
- 근로시간
- 휴일과 휴가
- 해고
- 퇴직급여
- 노사협의회
- 사회보험제도

2-1 임금

임금은 봉급, 수당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이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 일급 66,800원(8시간 근로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에 정한 퇴직금 또는 각종 수당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등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휴업지불, 산업재해보상금 등에 적용됩니다. 반면 통상 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된 시간급, 일급, 주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연장·휴일·야간·연차 휴가·해고예고수당 등에 적용됩니다.

2-2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준비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 작업완료 후 정리시간 등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서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2주 단위)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3개월 단위)에 의하여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날에 8시간,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수 있으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과 연소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기준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일	1주			
남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1주 12시간	《원칙》 당사자 합의	《원칙》 당사자 합의
여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1주 12시간	《원칙》 근로자 동의	《원칙》 근로자 동의
산후1년 미만 여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당사자 합의)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임신 중 근로자	8시간	40시간	금 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18세 미만 근로자	7시간	35시간	1일 1시간 1주 5시간 (당사자 합의)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2-3 휴일과 휴가

휴일과 휴가는 크게 그 내용과 조건, 효과를 법으로 정하는 ‘법정’휴일·휴가와 이를 노사 자율로 결정하는 ‘약정’휴일·휴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휴일·휴가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이 있으며, 약정 휴일·휴가로는 공휴일, 회사 창립일,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유급주휴일(週休日)

사용자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 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주 휴일에 근로를 하면 그날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총 25일을 한도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휴가사용 촉진을 위한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미 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산전후유급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분에 대한 임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이후 30일 분에 대한 임금은 고용보험(정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분의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2-4 해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해고 등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해 두며, 징계 시 해당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예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5 퇴직급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주택구입, 근로자나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선고,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임금 감소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며, 퇴직 후 연금 급여액이 적립금의 운영성과에 따라 변동됨.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임금의 1/12를 부담금으로 근로자 개인계좌에 납부함

2-6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노사를 대표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취급되는 사항으로는 협의사항과 의결사항,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2-7 사회보험제도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예방과 재취업촉진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 제외사업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생산활동
-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 수선에 관한 공사

(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개별보상책임을 면제받게 되며, 국가는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적용제외사업

- 농업 · 임업(벌목업제외) · 어업 ·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4대 사회보험제도>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목적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 장애 또는 사망 등 재해의 구제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따른 연금 지원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
시행		1995.7.	1964.7.	1988.1.	1977.7.
적용사업장		상시 1인 이상	상시 1인 이상	상시 1인 이상	상시 1인 이상
가입대상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국인		적용제외(D-8 체류자격 소지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판단)	가입대상	원칙적 가입대상 (국가별 상호주의)	가입대상
보험료 (2019)	근로자	보수총액 0.65% (실업급여)	없음	표준보수월액 4.5%	표준보수월액 3.230%
	사용자	- 실업급여: 0.65%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 개발: 0.25~0.85%(기업 규모별 차이)	보수총액 6/1,000 (금융 및 보험업) - 225/1,000(석탄광업) (업종별로 상이함)	표준보수월액 4.5%	표준보수월액 3.230%
보장내용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요양비, 건강검진, 장제비 등
주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행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3장 조세

Taxation

1. 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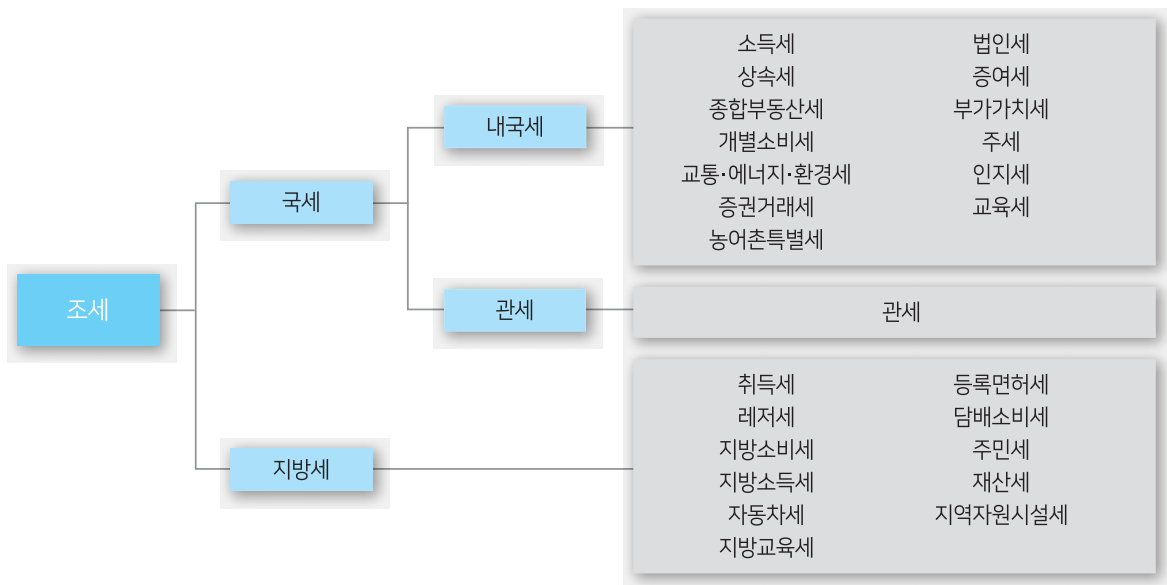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로서, 국세(16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되어 주요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한국의 조세제도
- 한국의 조세체계

1-1 한국의 조세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해온 한국의 조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 한국의 조세체계



2.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합니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로 나뉘며, 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세금이 직접세이고,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은 빈번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126번)이나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관세

2-1 소득세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들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금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 과세표준에 대해 6~4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만 있을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금액 ×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금액 ×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 ×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76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 ×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9,460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 × 40%)
5억 원 초과	1억 7,460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42%)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상당의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4지방소득세” 부분 참조)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퇴직소득

퇴직소득이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표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X20%+㉡X80%)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며, 2020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전액 개정규정(㉡X100%)에 따라 계산합니다.

㉠ 종전규정(2015년) 방식 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x 1/근속연수 x 5) x 기본세율 x 1/5 x 근속연수

㉡ 개정규정(2016년) 방식 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1/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2조)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소득
 -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상당의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4지방소득세” 부분 참조)

(3)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당해 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 및 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 기타 자산, 일반주식(주권상장법인 등 소액주주의 주식 장내양도는 제외)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이 중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과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제4호·제8호·제10호, 제4항 제3호·제4호, 제5항, 제7항) >

자산	구분		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2)}
		2년 미만	40% ^{1),3)}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50% ⁵⁾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세율 (단, 조정대상지역 ⁶⁾ 내→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세율 (단, 조정대상지역 ⁶⁾ 내→기본세율+2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기본세율+10%p) ⁴⁾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4)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기본세율 + 10%p)

5), 6) 조정대상지역('18.12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동래·수영),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수원시(팔달구), 용인시(수지구·기흥구), 구리시, 안양(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는 빈번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 거래시점에 따라 세율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126번)에 문의, 또는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거나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상당의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4지방소득세" 부분 참조)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주택 (입주권포함)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20%p	
		지정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10%p	
			2년 미만	기본세율+10%p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1년 미만	50%	(경합없음)
				40%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16%	-
4,600만 원 이하	25%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34%	522만 원
1.5억 원 이하	45%	1,490만 원
3억 원 이하	48%	1,940만 원
5억 원 이하	5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52%	3,540만 원

※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08.12.26.) 제14조]

<주식(「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3억 이하	20%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3억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 증권예탁증권(DR: Depositary Receipts)은 '11.1.1. 이후 양도 분부터 과세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을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0%
중소기업 주식 등은 '1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파생상품 등(「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67조의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율	비고
2016.1.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선물·옵션	20% (탄력세율 5% → 10%p)*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2016.7.1.이후 양도분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장내파생상품
2017.4.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파생결합증권

* '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2-2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비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며,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39억 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금액 × 22%)
3,000억 원 초과	655억 8천만 원 + (3천억 원 초과금액 × 25%)

※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상당의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4지방소득세" 부분 참조)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 및 개인사업자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영세율제도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완전면세제도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면세의 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면세재화·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 남아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부분 면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및 면세 적용대상>

구분	적용대상
영세율	• 재화의 수출 • 용역의 국외공급 • 외국항행 용역의 공급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면세	• 서민관련 기초생활필수 재화 및 용역: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용역, 주택 등 • 국민후생을 위한 재화 및 용역: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등 •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도서, 예술창작품,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 • 생산요소 관련 재화 및 용역: 금융, 보험 용역, 토지의 공급 등 • 근로 유사 인적 용역: 인적 용역(연예인, 작곡가 등) • 면세된 재화의 수입

※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실제 영세 및 면세 대상에 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령 및 예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 관세

관세(Customs Duty)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되며 (「관세법」 제15조),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상의 물품별 세율에 따르게 됩니다(「관세법」 제49조).

$$\text{관세} = \text{관세의 과세표준} \times \text{관세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참조

3. 지방세

지방세는 일차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비를 자체적으로 확보·조달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지만, 소득분배라는 사회정책적 기능과 지방산업 및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지역정책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세에 속하는 것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고, 소득과세로는 지방소득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과세로는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 지방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은 「세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행정부서, 또는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3-1 취득세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따릅니다. 그러나 국가·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또한 건축(신축·개축 제외)·개수하는 경우와 차량·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및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취득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11~12조)>

구분				세율
부동산 취득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2.8% (농지 2.3%)
	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 무상 취득			3.5% (비영리사업자의 취득 2.8%)
	③ 원시취득			2.80%
	④ 공유물의 분할 또는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2.30%
	⑤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0%
	⑥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4% (농지 3%)
	⑦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2013.8.28. 취득 시부터)			1%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 2%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3% (9억 원 초과)
부동산 외 취득	선박	등기, 등록 대상 선박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2.50%
			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 무상 취득	3.00%
			③ 원시취득	2.02%
			④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2.02%
			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00%
		소형선박	소형선박	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0%	
	차량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7% (경차 4%)
		영업용 자동차		4%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5% (경차 4%)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2.00%
		위 이외의 차량		2.00%
	기계 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인 기계장비		3.00%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00%
	항공기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2.00%
		그 밖의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2.01%
		그 밖의 최대이륙중량 5,700kg 미만 항공기		2.02%
	입목			2.00%
	광업권 또는 어업권			2.00%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00%

한편, 다음과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지방세법」 제13조)>

구분		중과세율
유형 A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함)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 2%의 2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 B	사치성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 2%의 4배
유형 C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표준세율×3배) - 2%의 2배 ※ 주택취득시 표준세율 + 2%의 2배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 A 및 유형 C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표준세율의 3배
유형 B 및 유형 C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표준세율의 3배 + 2%의 2배

<취득세 비과세대상(「지방세법」 제9조)>

구분	적용대상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 -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주택조합등과 조합원간 부동산 취득 등 제외) -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 - 임시행정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1년 이하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3-2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취득세로 통합되어 제외)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인 면허를 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등록을 위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권리 등을 등록할 당시의 가액이나 채권금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고, 등록 당시 가액은 등록자의 신고에 따릅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일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28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부동산 등기 ¹⁾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	0.8%
	소유권의 이전	유상이전(주택)	2%
		무상이전(상속)	1.5%(0.8%)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	① 지상권	부동산가액
		② 저당권	채권금액
		③ 지역권	요역지가액
		④ 전세권	전세금액
		⑤ 임차권	월임대차금액
	기타	①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
		② 가등기	부동산가액
		③ 그 밖의 등기	매1건 6,000원
법인등기 ²⁾	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① 설립과 납입	납입액
		② 자본·출자의 증가(영리법인)	증자금액
		③ 출자총액·재산총액의 증가(비영리법인)	증자금액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단, 재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 자본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증자금액 0.1%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매1건 112,500원
	지점·분사무소의 설치		매1건 40,200원
	위의 것 외의 등기		매1건 40,200원
기타등기	자동차 등록	비영업승용자동차	5%(경차 2%)
		위 외의 영업용 차량	2%
		위 외의 비영업용 차량	3%(경차 2%)
	선박 등기	-	0.02% 등
	항공기 등록	-	0.01~0.02%
	기계장비 등록	소유권 등록	1%
		저당권 설정, 이전 등록	0.2%

1) 부동산등기의 경우 6천 원 미만 시 6천 원으로 함

2) 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시 세액이 112,500원 미만 시 112,500원으로 함

3-3 주민세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뉘고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되는 것이고,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주민세의 경우, 균등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 조정 할 수 있으며, 재산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가기구 및 주한 외국원조단체(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 제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주민세의 과세 대상 및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78조)>

구분		과세대상	세 액	비 고
균등분	개인균등분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내에서 조례로 결정	제한세율
		시·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원	표준세율
	법인균등분	종업원수 100인 초과,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00억 원 초과	500,000원	표준세율
		종업원수 100인 초과,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50억~100억 원	350,000원	
		종업원수 100인 이하, 자본금 및 출자금액이 50억 원 초과	200,000원	
		종업원수 100인 초과, 자본금 및 출자금액이 30억~50억 원		
		종업원수 100인 이하, 자본금 및 출자금액이 30억~50억 원	100,000원	
		종업원수 100인 초과, 자본금 및 출자금액이 10억~30억 원		
		기타법인	50,000원	
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 부과)X㎡	사업소 연면적1㎡당 250원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2배)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부과X)	매월 지급한 종업원급여총액 x 0.5%(표준세율)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3-4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청산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세액 2,000원 미만의 소액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 대상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92조, 103조의3, 103조의20 등)>

구분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표준세율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종합소득과세표준 x 표준세율	0.6~4.2%
		(퇴직소득과세표준 x 1/근속연수 x 5) x 표준세율 x 1/5 x 근속연수	0.6~4.2%
		양도소득과세표준 x 표준세율	양도소득세율의 10%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과세표준 x 표준세율	1~2.5%
		토지 등 양도소득 x 3%(미등기자산 4%)	
		청산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 x 표준세율	1~2.5%

※ 2014.1.1. 「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법인세,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5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또는 구세)이며,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0.25%(기타 건축물 세율)의 5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일부 재산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20% 정도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구분	과세표준		세율(%)
토지	종합합산	5,000만 원 이하	0.2%
		5,000만~1억 원	10만 원+5,000만 원 초과액의 0.3%
		1억 원 초과	25만 원+1억 원 초과액의 0.5%
	별도합산	2억 원 이하	0.2%
		2억~10억 원 이하	40만 원+ 2억 원 초과액의 0.3%
		10억 원 초과	280만 원+10억 원 초과액의 0.4%
	분리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0.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4%
		1, 2이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0.2%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25%
주택	별장		4%
	그 밖의 주택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1.5억 원 이하	60,000원+6천만 원 초과액의 0.15%
		1.5억 원~3억 원 이하	195,000원+1.5억 원 초과액의 0.25%
		3억 원 초과	570,000원+3억 원 초과액의 0.4%
선박	고급선박		과세표준액의 5%
	기타선박		과세표준액의 0.3%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0.3%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0.25%의 50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비도시형 공장용 건축물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 종가함

단, 다음과 같이 국가와 용도 구분에 포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재산세 비과세대상(「지방세법」 제109조)>

구분	적용대상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용도에 따른 비과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 - 비상재해구조용·무로도선용·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

4장 통관·관세

Customs Clearance & Tariffs

1. 통관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절차는 「관세법」 및 무역관계 법령의 영향을 받으며, 외국인투자가가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관세청장의 현물출자 완료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입통관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통관
- 보세구역

1-1 수입통관

수입통관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입신고사항, 신고내용과 현품의 일치 여부, 수입관련 제반 법규정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관세 등을 징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1) 수입신고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출항 전, 입항 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신고 시기

- 출항 전 신고: 항공기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 출항 전에 신고하는 것(입항 5일전, 항공기는 1일전부터 수입신고 가능)
- 입항 전 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을 기준, 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입항 5일전, 항공기는 1일전부터 수입신고 가능)
-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물품통관을 위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
- 보세구역장치 후 신고: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

수입신고의 효력은 신고인이 전송한 신고자료가 세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에 발생하며, 과세물건, 적용법령, 과세환율, 납세의무자 등은 이때에 확정됩니다.

수입신고 제출서류

- 송품장(Invoice) 및 가격신고서,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
- 선하증권(B/L)부분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분
- 원산지 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 「관세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대한 확인 서류
-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
-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다이아몬드 원석에 한함)(원본)

※ 제출서류는 원본이나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으로도 제출 가능(원본 제출대상은 제외한다). P/L(Paperless)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인(관세사 등)이 신고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내용을 전자서류로 제출(전송)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필요치 않음.

(2) 검사대상 선별

수입신고된 물품과 수입신고 사항의 일치 여부 및 관련법규의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수입물품선별검사(C/S)를 실시하고 검사대상과 서류제출대상을 선별합니다. 이때 물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신고인 등의 우범성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별이 이루어집니다.

(3) 물품검사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에서는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과 법률적 수입요건, 신고 시 제출서류 여부만 확인하고 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수입신고서와 제출서류만으로는 각종 표시, 용도,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타 물품의 은닉 여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 수입물품을 개장하여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4) 통관요건 심사

사후 심사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합니다.

- 신고 시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 허가·승인 등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물품의 품목분류 적정 여부 및 수입요건 구비 여부
- 원산지 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등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원칙적으로 신고수리 후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의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합니다. 동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 감면 및 분할납부 대상물품
- 관세 체납 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이나 부과고지 대상물품
-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신고수리 전 세액심사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는 물품(농산물, 중고자동차 등)

(5) 관세 등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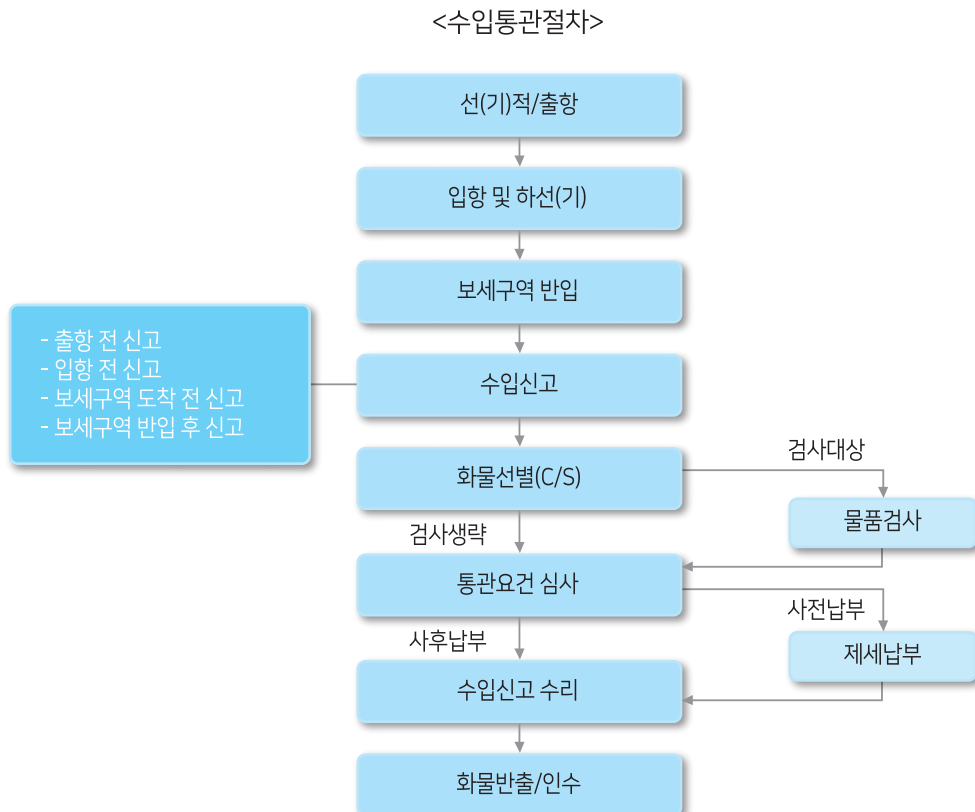
관세 등 제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신고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신고 납부방식과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부과지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부과지대상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신고수리 이전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서 상의 기재사항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며, 제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한 세액을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합니다.

반면, 부과고지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를 고지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과고지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보세건설장에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가동된 경우
-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 세관장이 경정처분 하고자 하는 물품(납세 신고한 세액은 제외)
- 기타 분할납부 고지대상 물품



1-2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통관

외국투자자가 자본재를 현물출자하여 투자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신고 및 등록에 있어 자본재 수입통관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1) 도입물품의 명세확인

투자신고를 마친 외국투자자는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본재
- 외국투자자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수입통관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자본재에 대하여 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장설립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자가 현물만을 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수입통관을 해야 부가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현금으로 투자 받은 자금의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할 자본재를 수입하거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차관방식의 투자자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는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면제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의 소급 면제 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현물출자 완료확인

출자의 목적물로 납입되는 자본재는 KOTRA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 완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회사설립등기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절차를 밟습니다.

<자본재통관절차>

외국인투자신고	• 신고기관: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 제출서류: 투자신고서 2부(조세감면업종의 경우 조세감면 신청서 3부)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확인	• 신청기관: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 확인대상: 출자목적물의 자본재 • 제출서류: 신청서 3부, 가격증명서류(물품매도확인서 등)
수입통관	•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통관 • 관세면제대상 자본재의 경우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관세사 통하여 전산으로 신청) 1부 -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 - 현물출자 또는 현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임을 증명하는 서류(투자신고서) 사본 - 조세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세감면 결정서) 사본 - Invoice, 가격신고서, B/L 또는 AWB, 포장명세서(해당물품에 한함),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관세법」 제226조에 정한 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이 요구되는 서류, 보세운송신고서(입고된 물품의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현물출자 완료확인	• 신청기관: KOTRA 관세청 파견관 • 구비서류: 신청서 2부, 수입신고필증 사본
회사설립 등기	• 신청기관: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 • 제출서류: 신청서 등 기본서류(p.30 참고)에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추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신청기관: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 제출서류: 신청서 등 기본서류(p.24 참고)에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추가

(4) 자본재 사후관리

외국인투자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본재를 무단 양도하거나 신고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본재의 처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감면 또는 면제받은 관세 등에 대해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 또는 폐업된 경우: 말소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
-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
- 외국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등을 양도 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양도 후 잔여 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 관세를 추징할 경우 물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 이를 경감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세 등의 추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자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기업이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 또는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이사자의 요건 및 구비서류의 확인, 과세 또는 면세여부, 기타 「관세법」 규정에 의한 절차를 간소한 방법으로 이행하는 것을 이사물품 통관이라 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통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의 해외체류기간 또는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의 국내체류 예정 기간에 따라 이사자, 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로 나누어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이사 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거주지(외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 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각 물품별로 과세가격 결정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전에 물품별 통관요건 및 이사물품으로서의 인정범위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품포장 및 선적 > 운송(선박회사) > 국내도착(선박회사) > 보세창고 입고 > 수입신고서 작성 및 EDI전송 > 수입신고(세관) > 물품검사(과세, 면세 결정)/수입신고 수리 > 출고

1-3 보세구역

보세구역이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정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보세구역은 다시 지정보세구역, 특해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보세구역의 구분>

구분	내 용
지정보세구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통관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인 지정장치장과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세관검사장이 있음
특허보세구역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특허한 장소로서, 수 출입화물을 보관하는 영업용 보세구역과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자기화물 보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용 보세구역으로 구분(보세창고, 보세공장 등)
종합보세구역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장치, 보관,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관세청장이 지정

2. 관세감면 및 환급

관세감면이란 국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납부의무를 특정의 경우에는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하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국제가 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지원제도를 의미합니다.

- 관세감면
- 관세환급

2-1 관세감면

관세감면은 수입하는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 세금을 조건 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세와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세로 분류합니다. 관세감면은 「관세법」에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한 목적을 띠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과 국가간 다자간 협약과 양자협약에 의해서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관세감면사항>

무조건 감면세	조건부 감면세
• 외교관용품의 면세(제88조) • 정부용품 등의 면세(제92조) • 소액물품 등의 면세(제94조) • 여행자휴대품 등의 면세(제96조) • 재수입 면세(제99조) • 손상감세(제100조) • 해외 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제101조)	•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제89조)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제90조) • 종교용품 등의 면세(제91조) • 특정물품의 면세(제93조)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제95조) • 재수출 면세(제97조) • 재수출 감면세(제98조)

2-2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에 불구하고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 신청방법 및 절차>

구분	내용	
환급대상 수출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단,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함) •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환급대상 원재료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다만,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환급 신청인	수출의 경우	수출자 또는 제보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우리나라 안에서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의 반입 및 기타 수출의 경우	공급자 또는 제보자 중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신청시기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때
	기타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의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때
신청기한	•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자재)으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 동일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 - 수출신고수리일,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 완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함	
제출서류	•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신고필증 등) • 소요량계산서 •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등) •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된 서류	

5장 금융·회계

Finance / Accounting

1. 금융시스템

한국의 금융시장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장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구성됩니다.

- 단기금융시장
- 자본시장
- 파생금융상품시장
- 외환시장
- 금융기관의 구조

<한국의 금융시장 구조>



1-1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은 기업, 가계,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간에 단기자금 과부족(過不足)을 조절하기 위해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한국의 단기금융시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콜 시장을 비롯하여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시장으로 구성됩니다.

단기금융시장은 크게 금융기관 상호간의 단기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는 ‘금융기관간’ 시장과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단기자금을 거래하는 ‘대고객시장’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간 시장으로는 콜 시장을 들 수 있으며 기업어음 및 표지어음 시장은 각각 기업 및 금융기관의 단기 자금조달에 주로 이용되는 대고객시장입니다. 이 외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및 양도성예금증서 시장은 금융기관간 시장과 대고객시장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1-2 자본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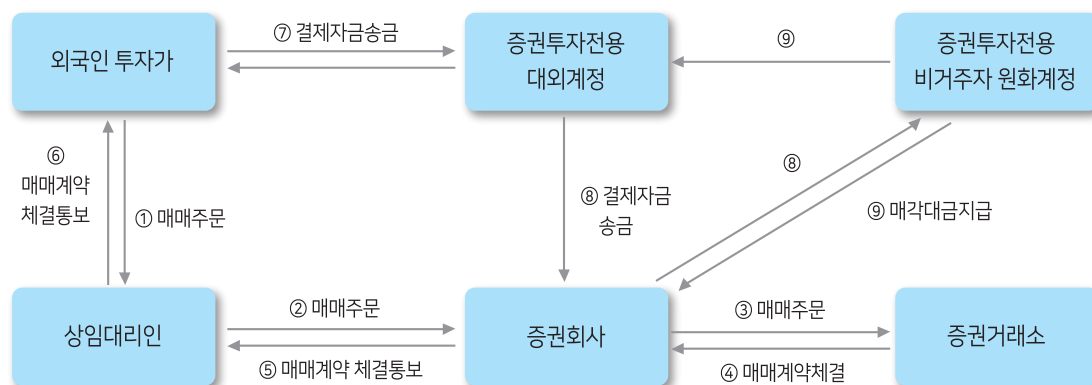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란 기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은행의 시설자금대출 등 장기대출시장을 포함하기도 하나, 좁은 의미로는 국채, 회사채, 주식 등이 발행·유통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크게 채권과 주식으로 구분됩니다.

외국인의 증권투자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는 자본유출입이 통화·금리·환율 등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는 외국인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증권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자기명의로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과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외국투자자로 등록하여 투자자등록번호(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투자자는 상임대리인을 지정하여 증권사를 통해 매매주문을 한 후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으로 결제자금을 송금하면 국내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증권을 매각하려면 매각대금을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에 입금시킨 후 동 금액을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으로 이체시켜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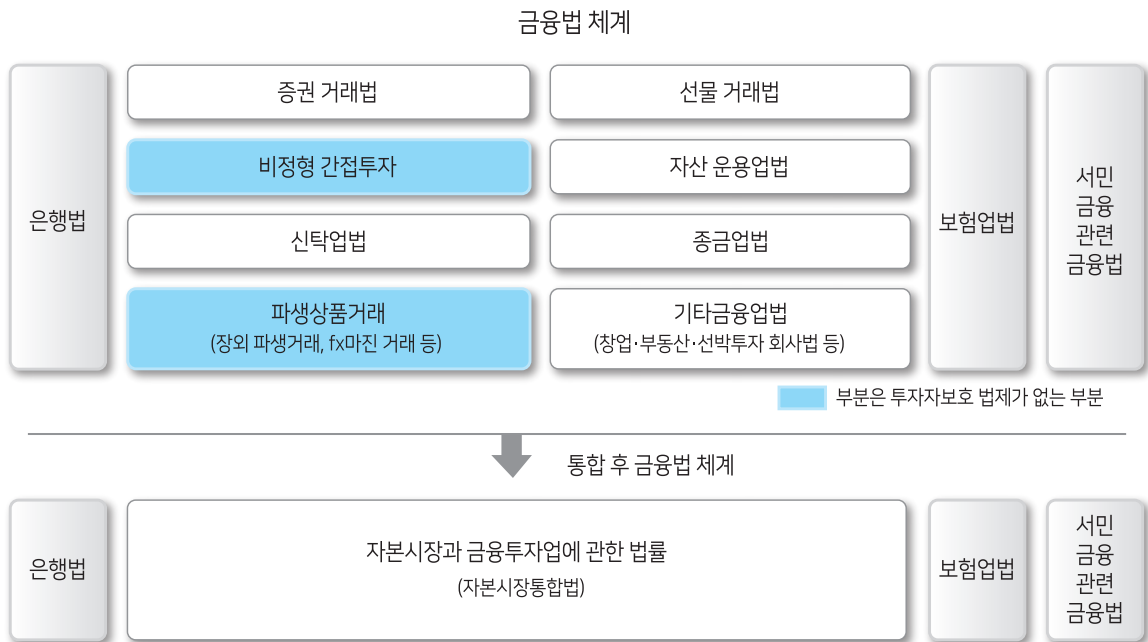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절차>



자본시장통합법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존 자본시장 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 업무영역이 엄격하게 구분된 금융회사간 영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자본시장은 투자회사(Investment Bank)와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가 촉진되고 파생상품 기초자산이 확대되는 등 금융허브시장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법 체계변화>



<자본시장통합법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금융투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 모든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신탁업)겸영 허용 - 소액 지급결제 기능 및 외국인 업무 원칙적 허용
금융투자상품 개념 포괄주의로 전환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모두 포괄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 설명의무 강화: 불완전 판매 시 투자권유 대행사 손해배상, 회사에도 배상책임 부과 '고객알기' 의무제 도입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업무 확대	- 투자 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으로 확대 - 펀드 종류별 투자 대상 자산제한 폐지

1-3 파생금융상품시장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상품으로, 거래기법에 따라 선도, 선물, 옵션, 스왑 등으로 나뉘지며 기초 자산에 따라 통화, 금리, 주식, 신용관련 상품 등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거래 장소에 따라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로 구분되는데, 장내시장이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금융상품이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시장이며 장외시장은 표준화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주요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구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통화관련	•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 통화선물옵션(currency futures options) • 통화옵션(currency options)	• 선물환(forward exchange) • 통화스왑(currency swaps) • 통화옵션(currency options)
금리관련	• 금리선물(interest rate futures) • 금리선물옵션(interest rate futures options)	• 선도금리계약(forward rate agreements) •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 • 금리옵션(interest rate options) • 스왑션(swaptions)
주식관련	• 주식옵션(options on stocks) • 주가지수선물(index futures) • 주가지수옵션(index options) • 주가지수선물옵션(index futures options)	• 주식옵션(options on stocks) • 지분스왑(equity swaps)
신용관련		• 신용파산스왑(credit default swaps) •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s) • 신용연계증권(credit linked no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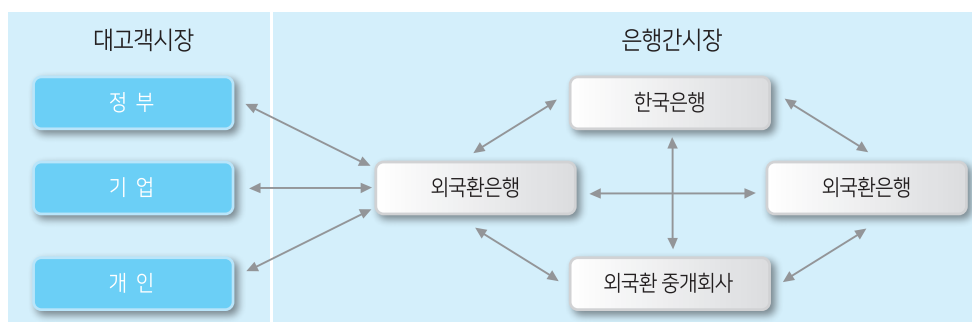
<파생금융상품 장내·장외거래 비교>

구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거래조건	거래단위, 결제조건 등 표준화	거래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
거래장소	거래소	대부분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전화 등으로 계약 체결
거래참가자	거래소 회원만 거래, 기타 참가자는 회원의 중개로 거래	제한 없음
계약상대방	거래소	상대편 거래당사자
결제	일일정산하며 대부분 만기 전 반대거래를 통해 차액만 정산	대부분 만기에 현물을 인·수도
증거금	거래소에 증거금 예치	딜러나 브로커가 고객별 신용한도를 설정하거나 담보금 예치 요구

1-4 외환시장

외환시장은 거래 당사자에 따라 은행간 시장과 대고객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은행간 시장은 좁은 의미에서의 외환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매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은행간 시장의 경우 선진국 외환시장과는 달리 브로커를 경유하는 거래가 직접거래보다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대고객시장은 일종의 소매시장의 성격을 갖는 시장으로 은행과 개인 및 기업 등 고객간에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외환시장의 구조>



한국 외환시장에는 기업과 개인 및 정부로 구성된 고객, 외국환은행, 중개회사, 외환당국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여기서 외국환은행은 국내 외국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중은행 모두를 포함합니다. 생명보험사와 증권사도 2002년 7월 이후 외환시장 참가가 허용되었으며 현재까지 중개 회사에 거래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등이 있고 외국계 증권사로는 메릴린치인타내셔널인코포레이티드증권, 유안타증권이 있습니다.

은행간 시장은 외국환은행 딜러간에 직접 거래하는 직접거래시장과 중개회사를 통한 장내거래소 시장으로 구분되며, 중개회사를 통한 장내시장에는 대부분의 외국환은행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금중개회사로는 1996년 금융기관간 단기금융 중개를 전담하는 중개회사로 설립된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가 있으며, 이후 2001년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2006년 KIDB자금중개주식회사가 자금중개 업무를 개시하여 현재 3개사가 영업 중입니다. 외국계 회사로는 아이캡(ICAP)외국환중개(주), 툴릿프리본(TULLETT PRE-BON)코리아외국환중개(주), 지에프아이(GFI)코리아외국환중개(주), 비지시(BGC)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주), 트레이디션(TRADITION)코리아(주), 니탄캐피탈(NITTAN CAPITAL)코리아외국환중개(주) 등이 있습니다.

<은행간 장내거래 주요내용>

구분	원/달러 거래
거래종류	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거래
거래단위	100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단위
호가방법	1달러에 대한 원화가격을 10전 단위로 호가
거래체결	전화 및 전자주문방식에 의한 매매주문을 전산으로 자동체결
거래시간	09:30~12:00, 13:30~16:30

1-5 금융기관의 구조

한국의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기관>

구분	분류1	분류2
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은지점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구분	분류1	분류2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자자문회사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우체국보험
기타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금융보조기관	신탁회사	신탁회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평가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자금중개회사	자금중개회사

2. 회계제도

한국의 회계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게 전면 개편하였으며, 현재 한국의 기업회계 기준은 2007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공표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와 관련하여 한국의 회계감사제도는 외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로 구분됩니다. 외부감사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회계사가 감사를 수행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의 내부적인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상근이사 1인을 내부회계 관리자로 지정하여 내부회계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회계기준
- 회계감사제도

2-1 기업회계기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감독위원회는 IMF와 세계은행의 권고를 받아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인 표준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결과 과거 범조문과 같은 형식에서 벗어나 국제회계기준의 편제를 따르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7월부터는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과 해석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한국회계연구원은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공포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가 외부이용자를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와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시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및 「세법」

한국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재무보고를 규정하는 법규는 「상법」, 「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이 있는데, 「상법」에서는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혹은 결손금 처리계산서로 나열하고 있는 반면 기업회계기준의 관점에서는 여기에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포함됩니다.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와 공평과세라는 대전제를 근간으로 하므로 발생주의·실현주의에 입각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의 경향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2 회계감사제도

(1) 외부감사제도

외부감사제도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제도로 회사 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행함으로써 주주·채권자·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인은 기업이 결산 시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외부감사의 대상을 아래와 같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함)
-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함)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에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함)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함)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경우 매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 등록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특히, 주권상장법인·협회 등록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반드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가 위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할 때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입니다. 특히 내부통제제도의 운영목적, 재무보고목적, 법규 준수의 세 가지 목적 중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보고목적(특히 재무제표의 신뢰성확보목적)을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운영목적이나 법규준수 목적과 관련된 통제절차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통제절차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모범규준’을 두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회사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인을 내부회계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매 반기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이사회에 매년 보고합니다. 이와 함께 외부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 여부를 검토·보고하는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위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기준’이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검토기준>



6장 외국인부동산취득

Foreigners' Real Estate Acquisition

1. 외국인부동산취득 제도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법에서는 “외국인등”이라고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 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등은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토지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른 취득절차가 상이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취득과 이용, 개발에는 일정한 규제와 제한이 있는데, 이와 같은 토지 관련 규제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토지 관련 규제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관련 법령>

구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대상	외국인등(외국인 개인, 외국법인,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	외국인(외국인 개인, 외국법인, 외국영주권자, 국제경제협력기구 등)	비거주자
주요 내용	부동산취득신고: 외국인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직접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 신고	부동산취득신고: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관련 권리(전세권, 저당권 등 포함)를 취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
신고 기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외국환업무취급은행, KOTRA	외국환업무취급은행
신고 시점	계약체결일부터 60일내	투자자금 반입이전	부동산취득자금 인출 시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등이 국내에서 부동산등(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할 경우 신고 또는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이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와는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이 법에서는 외국인등을 비거주자라 한다)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1)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부동산의 매매 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구분	계약으로 인한 취득	계약 외 취득	토지 계속 보유 신고
신고 대상	외국인들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허가대상 토지제외)	외국인들이 상속·경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등의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기간	계약체결일(계약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계약 외 원인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피상속인의 사망일 • 경매-경락대금 완납일 • 환매-환매계약일 또는 환매금액 공탁일 • 확정판결-확정판결문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기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구비 서류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 (대리인 신고 시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계약 외 원인 입증 서류, 신분증 • 상속-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경락결정서 • 환매-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확정판결-확정판결문	국적 변경 입증 서류, 신분증
처리 기간	즉시(3시간 이내)	즉시(3시간 이내)	즉시(3시간 이내)

(2) 토지취득 허가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토지 등 일정한 토지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허가대상 토지의 취득>

구분	내용
허가대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신청기간	계약 체결 전
허가기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 신분증
처리기간	허가신청일부터 15일 이내

(3) 벌칙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의 계약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가대상 토지에 대하여 허가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2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 또는 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3 외국환거래법

부동산거래가 외국환의 유·출입을 수반할 경우 외국환 유·출입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매매대금 반입 및 반출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1-4 토지 관련 규제

토지와 관련된 규제는 크게 취득과 관련된 제한, 이용과 관련된 제한, 개발과 관련된 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원칙적으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1) 토지취득 관련 규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가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토지이용 관련 규제

한국의 전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4개의 용도지역(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행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도)을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청사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장과 학교에 대해서는 신설과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신·증설이 제한됩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과밀부담금 제도

-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개발과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제도로써, 현재 서울 시내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부과하며 부담금 산출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음
- 부과대상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2만5천㎡, 판매용 건축물 1만5천㎡, 복합 건축물로서 부과대상 면적 중 판매용 시설의 면적이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건축물 1만5천㎡, 기타 복합 건축물은 2만5천㎡임

2. 외국인부동산취득 절차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목적, 국내 거주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 신고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취득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 거주외국인
- 비거주외국인
- 영주권자

2-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법인(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업무용 빌딩 매입, 공장용지 취득 등)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됩니다. 단,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외국환은행에 지점설치신고를 하고 지점 등기 후 지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 취득 절차>

절차	관련기관	유의사항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외국환은행 본·지점, KOTRA	
부동산취득 계약 및 대금지급		
부동산취득신고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	•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 등기기간: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 대리인신청 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2-2 거주외국인

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됩니다.

<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

절차	관련기관	유의사항
부동산취득 계약 및 대금지급		
부동산취득신고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	•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	• 등기기간: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사본(지점인 경우 지점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2-3 비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

절차	관련기관	유의사항
부동산취득계약		
▼		
부동산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은행 본·지점	• 신고시점: 부동산취득자금 인출 시 • 제출서류: 부동산취득계약서,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유의사항 -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 부동산처분대금 해외송금 시 동 신고서를 송금은행에 제출하여야만 처분대금 송금가능
▼		
대금지급		
▼		
부동산취득신고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	•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부동산취득계약서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 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법인: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 비거주 외국인 개인 - 신청기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출서류: 토지취득신고필증, 여권사본 • 비거주 외국인 법인 - 신청기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제출서류: 토지취득신고필증, 당해 국가(주한대사관 포함)에서 발급한 법인등록·대표자·대표자 주소지 증명 서류 등 ※ 대리인신청 시 대리인 국적확인용 신분증,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 받은 위임장
▼		
부동산등기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	• 등기기간: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주소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원인 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 위임 시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필요

2-4 영주권자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국내거주와 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영주권자의 부동산 취득 절차>

절차	관련기관	유의사항
부동산취득 계약 및 대금지급		
▼		
부동산취득신고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	-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부동산취득계약서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	서울지방법원	제출서류: 주소지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		
부동산등기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	- 등기기간: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주소지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주소지증명서: 재외공관발행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3. 부동산매매대금 반입 및 반출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은 크게 해외에서 휴대반입 및 송금된 자금과 국내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구분됩니다. 해외에서 휴대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 반입과 당해 부동산 매각대금의 반출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
- 거주외국인
- 비거주외국인

3-1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예정인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신고 후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 되고, 부동산 취득 등 제반 준비절차가 끝난 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영업자금 형태로 자금을 국내에 반입한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 취득자금을 건별로 국내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내에 있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이나 국내지사의 영업자금 등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부동산 처분대금의 송금에 있어서도 부동산 건별로 송금하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자본금 감액 또는 배당금 항목으로 송금하고 국내지사의 경우 영업수익 항목으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국내지사의 경우 당해 지점을 폐쇄한 후 그 청산대금을 대외로 송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자금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2 거주외국인

거주외국인이 거주용 혹은 비영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별도 신고절차 없이 매입자금을 반입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휴대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해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면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그 밖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3 비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금 반입 시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장에게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된 부동산의 매각자금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지급신고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반출 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부동산 관련 조세

부동산에 부과되는 조세는 부동산의 매입단계와 보유단계, 그리고 매각단계에서 각각의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입단계의 조세는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로 나뉩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의 조세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부동산의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부동산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단계 조세
- 보유단계 조세
- 매각단계 조세

4-1 매입단계 조세

부동산 매입단계(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취득세(취득가액의 4%, 주택의 경우 1~3%) 및 부가가치세(V.A.T. 건물취득가액의 10%로서 사업자인 경우 공제·환급 받을 수 있음)가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Surtax)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4-2 보유단계 조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부과 됩니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5년간 재산세를 5배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유 부동산이 일정규모(주택 6억 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80억 원)를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0.5~2.0%, 토지의 경우 종합 합산과세표준의 0.75~2.0%, 별도합산과세표준의 0.5~0.7%)와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가 부과됩니다.

4-3 매각단계 조세

매각 단계에서는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6~38%,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와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미등기 자산은 70%, 등기되고 1년 미만은 40~50%, 등기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세율~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건축물 양도가액의 1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영위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취득 등의 경우에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 및 업무용 부동산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구입 관련 혜택을 부여함.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받는 자는 전액 감면, 기타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비율만큼 감면 받을 수 있음.

<부동산 관련 조세>

단계	세목	비 고
취득·등기	취득세	표준세율 취득가액의 4.0%(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 ※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13.8.28. 취득시부터): 1~3%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 신·증설용 부동산 취득 등: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뺀 세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신축, 증축에 한함):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 •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선박·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합한 세율
		감면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영위기업,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은 감면 가능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2~35만 원
	부가가치세	• 건물 취득가액의 10%(사업영위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취득 시 면제
보유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시가표준액 1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특별시 및 광역시내에서는 시가표준액의 50/1,000,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가표준액의 45/1,000)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시 투자비율만큼 채권매입 감면(조세감면 대상 기업은 전액감면)
	재산세	표준세율 • 주택: 0.1~0.4%(별장은 4%) • 건축물: 0.25~0.5%(골프장, 고급오락장내 건물은 4%,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신·증설의 경우 5년간은 1.25%)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0.2~0.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2~0.4%,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0.07~0.2%(회원제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4.0%)
		감면 취득세 감면과 동일
	중과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신·증설시: 5년간 5배 중과
	종합부동산세	•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과세표준의 0.5~2.0% • 토지(종합합산 5억 원 초과, 별도합산 80억 원 초과): 과세표준의 0.75~2.0%(종합합산), 과세표준의 0.5~0.7%(별도합산)
	기타부가세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

단계	세목		비 고
매각	개인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70% • 등기되고 1년 미만: 50%(주택 등은 40%) • 등기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40%(주택 등은 기본세율: 6~38%) • 등기되고 2년 이상: 6~38%(초과 누진)
	법인	법인세	• 매매차익은 영업 외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부과 • 주택(임대주택, 사용인 제공 사택 등 일부 제외)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10%, 미등기시 4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10%
	부가가치세		건축물 양도가액의 10%(양수인으로부터 징수)

※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은 빈번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126번)이나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장 공장설립

Factory Establishment

1. 공장의 정의

- 「산업집적법」상 공장
- 도시형 공장
- 지식산업센터

1-1 「산업집적법」상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항, 이하 「산업집적법」으로 약칭)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대통령령(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17년 1월)에 의한 제조업("C", 10~34)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공장의 범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용지

제조업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합니다.

제조업의 정의(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총설)

1.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

2. 타산업과의 관계

-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에 분류
-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
-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 다만, 주된 부가가치가 유지 및 수리 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또는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분류
-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
-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
-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장비 조립품, 밸브, 기어, 구름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
- 출판,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
- 제조공장 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
-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그 제품을 자기명으로 제조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참고> 타법상 공장의 정의(「산업집적법」상 공장과는 차이가 있음)

구 분	정 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 「건축법」상 공장은 건축물 용도의 한 종류이며, 「산업집적법」상 공장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되는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이상인 공장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 종과 대상: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 (옥외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법인세 과세 특례 및 감면 대상: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1-2 도시형 공장 (「산업집적법」 제2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입니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다음 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위 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

<도시형 공장의 업종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시행으로 추후 분류번호, 업종명 변경 예정) >

분류번호	업종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7329	기타공학기기 제조업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2호)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1-3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제 2조13호, 제28조의5)

(1)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합니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지상층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일 것. 다만,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2)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참고)

1.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기타 특정 산업의 집산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개정 2005.5.26.)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또는 같은 표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

(3) 지식산업센터 입주관련 기타 사항

- 입주업체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규모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면적의 50% 이내(단, 수도권 30%이내,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20% 이내)로 한다.
-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의 시설(제34조 제2호 도시형 공장 제외)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참고] 공장설립 관련법령

국토기본법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03.1.1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03.1.1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토지이용 및 건축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초지법」, 「하천법」, 「사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발전법」

2. 공장설립 인허가 실무

공장의 설립은 공장의 신설부터 등록변경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뜻합니다. 공장설립의 승인(인허가)은 공장뿐 아니라 공장 부대 시설 및 제조시설의 설치와 승인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공장의 설립은 공장건축면적에 따라 승인 또는 신청의 단계를 거치고, 공장의 설립이 완료된 경우 기계·장치의 설립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승인권자에게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장의 설립
- 공장설립의 승인(인허가)
- 공장의 설립완료신고 및 등록
- 공장설립 소요기간 및 유형

2-1 공장의 설립

공장을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설치 등의 승인과 신규공장등록(규모 미만), 등록변경 신청 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분	정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등록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않음
이전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 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설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 소유자·점유자는 공장 등록 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등록대장에 등록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 함

2-2 공장설립의 승인(인허가)

(1) 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 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 승인대상 이외(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장건축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가리킵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비교] 법규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정의

- 공장설립승인대상 공장건축면적(『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기존공장면적률 * 산정 시 공장건축면적(『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제조+부대)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 기존공장면적률 = 공장건축면적 등/공장부지면적 × 100

(3) 부대시설의 증설

- 등록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신청 후 변경교부합니다.
- 공장설립승인 후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 준공 후 공장설립완료신청시 부대시설의 면적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 사무실 · 창고 · 경비실 · 전망대 · 주차장 · 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 · 저유조 · 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 · 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 「소음 · 진동 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음 · 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8. 식당 · 휴게실 · 목욕실 · 세탁장 · 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9.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10.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 ·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11.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 ·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공장설립 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 공장부지면적(부지면적보다 감소, 부지면적이 20% 이내로 증가 제외)
- 공장건축면적(20% 내 증가,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감소 제외)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제외)

(5) 공장설립 등의 변경신고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 시)
- 세부업종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변경)

(6)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등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4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9조의4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산업단지 내는 「산업집적법」 제42조 참고)

-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착공을 않는 경우(산업단지 내는 2년)
-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 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자기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시설 설치의 중단,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 및 화재, 천재지변으로 공장건설 중단한 경우는 제외
-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7) 제조시설설치승인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제조시설면적의 20%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8)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 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3 공장의 설립완료신고 및 등록

(1)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제출합니다.

(2) 공장부분등록신청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며,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당해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고, 7일(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당해 등록공장의 유효기간 및 완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공장부분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공장건축물의 등록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공장의 등록

공장설립승인권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장설립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3일(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등록사항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업종변경사항

(6) 공장등록사항의 취소

- 공장이 멸실 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 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 산업단지 내의 경우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공장 일부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공장을 운영 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제조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
- 공장 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공장등록의 일부 취소 가능

2-4 공장설립 소요기간 및 유형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 일반공장설립: 20일 내 - 승인권자 권한 內: 14일 내 - 의제처리 無: 7일 내 - 창업사업계획: 20일 내 - 입주계약: 5일 내 - 관계기관 협의시: 10일 내	- 건축허가: 건축허가면적에 따라 상이 - 사용승인: 7일	- 공장설립완료신고 - 기계·장치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부분등록 및 건축물등록 가능) - 공장등록 사실 통보 -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 내(의제처리시 20일) - 공장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내 (의제처리시 20일)

<공장설립 유형>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	모든 공장 설립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제16조(공장의 등록) * 건축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 미만도 승인신청 가능)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3. 공장 입지 및 승인 절차

공장입지는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하고 육성하기 위한 계획입지와 개별적으로 인·허가 사항의 승인을 득한 개별 입지로 구분됩니다. 공장입지가 선정된 이후에 개별기업은 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 통해 공장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공장설립신청에 대해 협의와 타당성 검사를 통해 공장설립승인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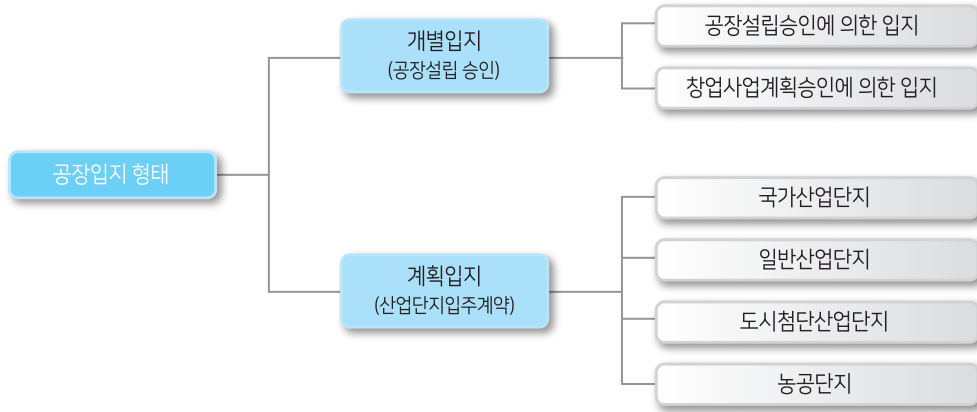
- 입지유형
-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 공장설립 진행도
- 공장설립 승인절차

3-1 입지유형

(1) 공장입지 유형

구분	내용
계획입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산업입지
개별입지	사업상 여건, 지리적 요인, 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와 기업가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성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지역

(2) 공장입지 형태



3-2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 공장신설승인신청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 공장설립사업계획서(창업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토지(임야)대장
- 토지 · 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의제처리 신청서류 (예: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 토목측량 설계도면
 -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 건물배치도 · 피해방지계획도 등

3-3 공장설립 진행도



3-4 공장설립 승인절차

구분	신청기업	시장·군수	신청기업	신청기업	시장·군수
절차	공장설립 승인신청	관계부서협의 ↓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등록
내용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준비 해당 시·군 공장설립담당부서 (공장설립 민원실)에 접수	복합민원심의 (관련법률 적용심의)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환경관련 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건축허가 신청 건축착공 신고 건축 사용검사	공장이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기계설치완료 후 2개월 이내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공장설립완료신고 접수후 3일 이내 통보

8장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지식재산권 제도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한국 정부의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집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의 종류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절차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

1-1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의 정의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물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기계와 같은 동산의 소유권이 있으면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도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계끔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원천/핵심기술(대발명)
		실용신안권	주변/개량기술(소발명)
		디자인권	물건의 디자인
		상표권	식별력 있는 기호/문자, 도형
	저작권	저작권	문학, 예술분야 창작물
		저작인접권	실연가,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

1-2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절차

(1) 특허

보호대상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허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진보성).

주요 절차 설명

•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며,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

•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 거절결정불복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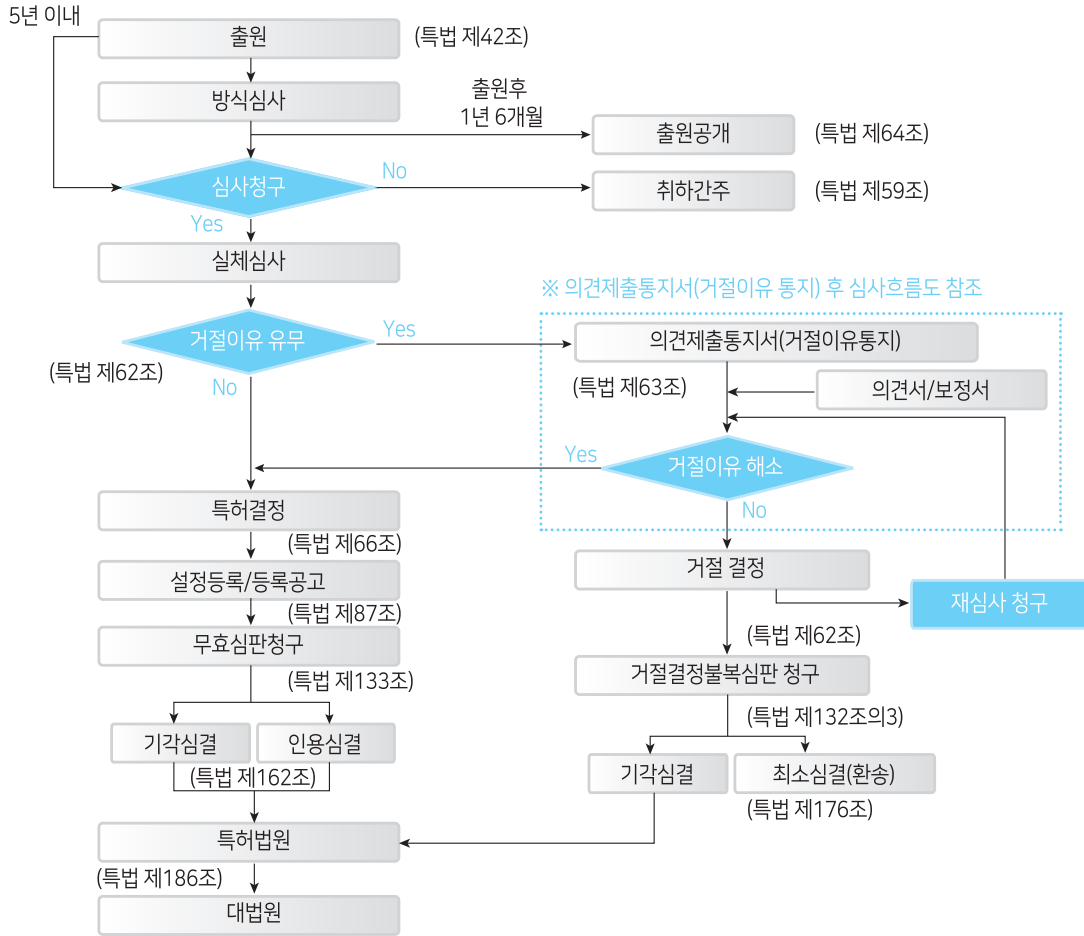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도>



(2) 실용신안권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출원일이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인 경우 적용)

-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기술을 조기에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
-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부실 권리의 행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기술평가제도 도입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 후 등록제도, 출원일이 20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 전 등록제도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심사 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 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

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

-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 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특허제도와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

(3) 상표권

상표의 개념

• 상표법상 상표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 종전에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년 7월 1일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

• 서비스표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단체표장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 업무표장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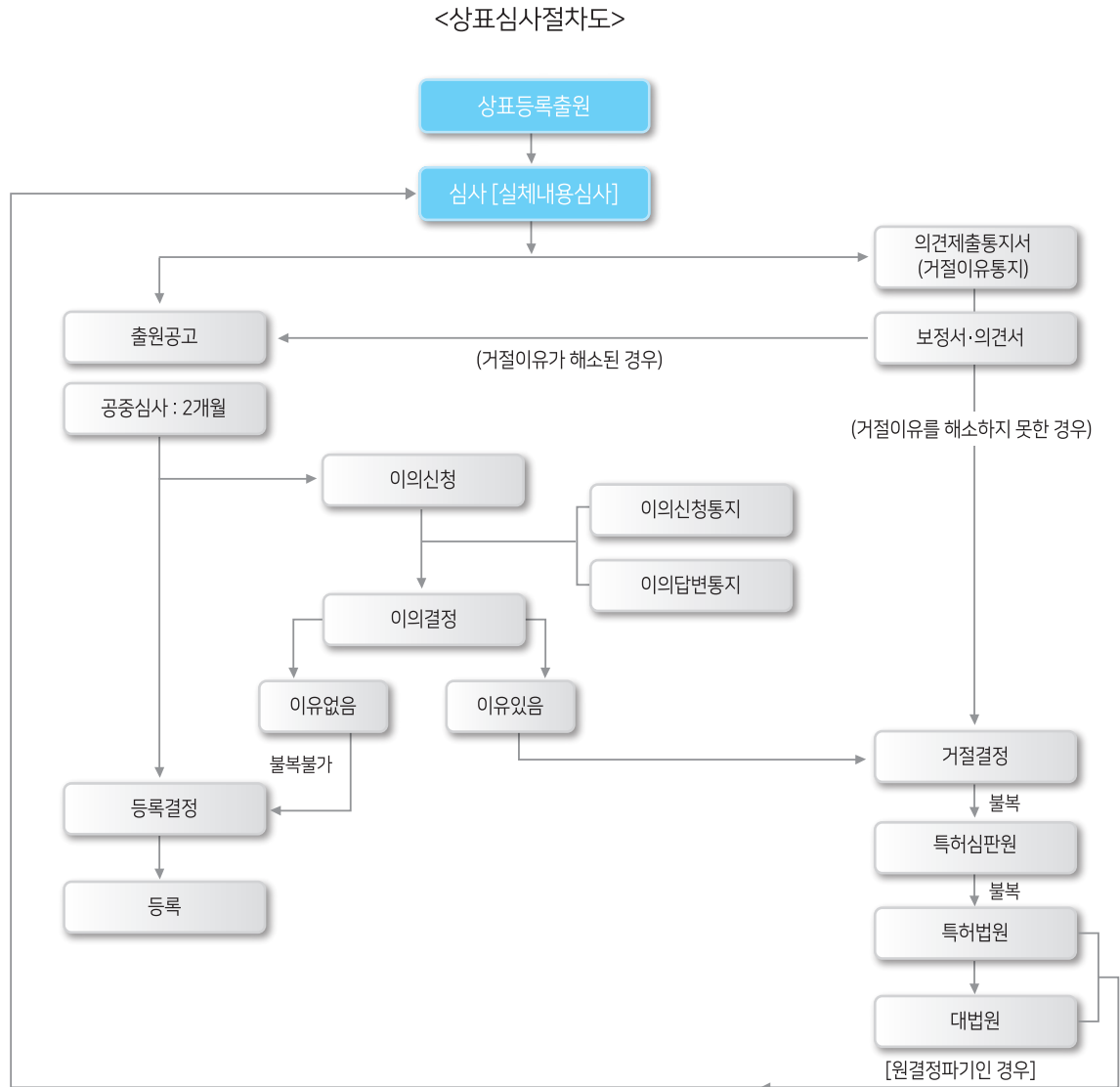
심사절차

•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상표로의 권리를 설정등록 하기 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출원인은 타인이 무단으로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여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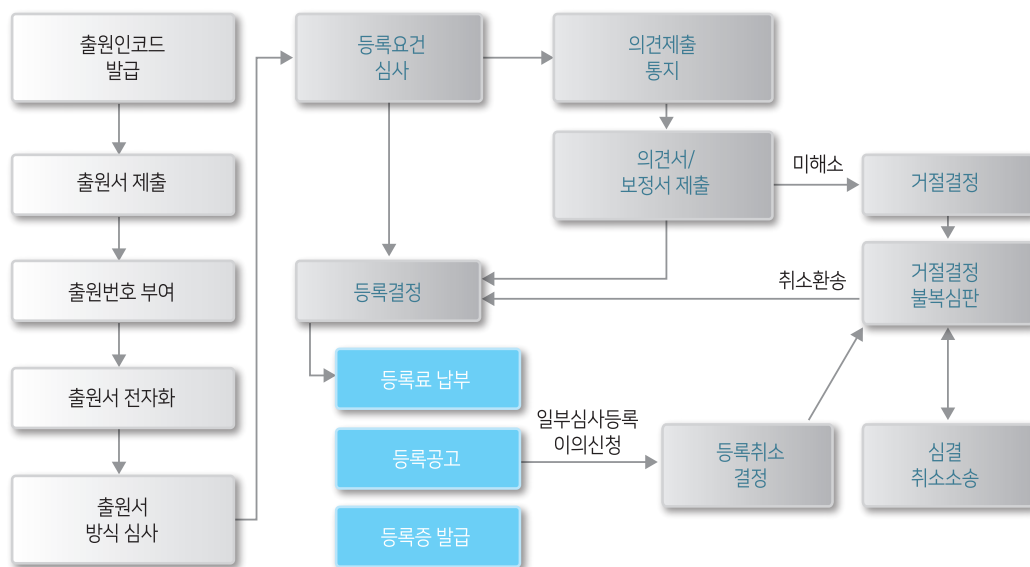


(4) 디자인권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처리 절차

-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식품류(A1), 의복류(B1), 침구류(C1), 용지·인쇄물류(F3), 포장용기류(F4), 직물지류(M1), 잡화류(B2), 신발류(B5), 교재류(F1), 사무용품류(F2)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 및 처리절차도>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 유사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상관습상 한 벌로 판매되고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한 벌의 차 세트, 한 벌의 꺾연 용구세트 등)

• 비밀디자인제도

출원 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한 제도

1-3 저작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로 구성됩니다.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법 제2조 1호)을 말하며, 반드시 문학·예술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 구성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한편 2003년 법 개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창설되면서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1) 「저작권법」

개념

-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입니다.

종류

- 저작권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권의 발생 및 법적 성질

-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함.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차이가 있음
- 저작권의 법적 성질: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며, 준물권성이 있음.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리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하지만 저작권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음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 ·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직 · 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 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지식재산권이 제한됩니다(출처 표시가 의무화 된 경우가 있음).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원칙: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
-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 공동저작물: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 보호기간의 기산: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1일로부터 계산
-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의 사망 또는 공표일로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50년 기간이 만료한 것입니다.

저작권의 등록

-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법률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 추정력: 등록된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로 추정.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음.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했을 때 과실에 의하여 침해받은 것으로 추정함
 - 대항력: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등록을 해놓은 경우 나중에 이중양도 혹은 출판권 설정이 발생하더라도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됨

(2) 저작인접권

개념

-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와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저작인접권자

- 실연자: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자를 포함(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
- 음반제작자: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획·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 방송사업자: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함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됩니다. 또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때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이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실연: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
- 음반: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
- 방송: 방송을 한 때로부터 70년

(3)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일종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구성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개념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함(법 제2조 19호)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짐(법 제93조 제1항)

• 보호기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함(법 제95조 제1항)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 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함(법 제95조 제2항)

(4) 침해 구제

원칙

-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 구제

- 피해자는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형사 구제

- 저작권자가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수사당국에 소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야 성립하는 친고죄로서, 그 침해를 안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는 저작권자에게 침해가 있음을 제보할 수는 있지만 직접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아울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아울러 처벌할 수 있습니다(법 제136조 제2항).

1-4 신지식재산권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라 특허·저작권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 외에 새로운 영역의 지식재산(新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되기 어려운 전통지식, 식물신품종, 지리적표시 등의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첨단저작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그 밖에 지리적 표시, 인터넷도메인네임, 맛/소리/냄새 상표 등에 따라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각각 담당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11.5월)시켜 국가지식재산의 통합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보호노력

한국은 지식재산권 강국의 실현을 모토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방면의 행정적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따른 세계의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특허청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FTA 확산 추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국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 국제협력강화

2-1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지식재산권의 창작, 보호 및 실용화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권 강국의 실현'이라는 장기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는 관련 IP 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은 전세계 경제무역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으로서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G5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체계 구축

특허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심사·심판의 처리기간과 품질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주요 선진국과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나눔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G5 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주요국과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수준의 심사처리기간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10년 특허심사처리기간이 연평균 18.5개월로 미국('09년 25.8개월), 일본('09년 29.1개월) 등 주요국에 비하여 신속한 심사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원인의 특허전략에 따라 '우선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 중 심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3트랙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출원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은 선진5개 특허청(IP5)*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0대 기반과제를 공동 추진하는 등 주요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이 해외에서의 지재권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나눔사업을 확대하여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호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P5란?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선진5개 특허청으로서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유럽 특허청을 말함

관련 법제 및 시스템 정비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상표의 중요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홀로그램 상표, 동작상표 등을 추가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FTA협약에 따른 이행사항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정비가 진행 중이며 새로운 행정수요와 제도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민원서식을 민원인 관점에서 통·폐합하고, 또 서식의 기재항목과 기재요령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조 상품 방지 지원

위조 상품 규제를 효율화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은 검찰,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진품과 위조 상품의 진위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조 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위조 상품을 제조·유통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허청훈령 제655호, '10.2.25.개정)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강화 노력

지식재산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중의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또한 일반 대중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은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비디오 제작 등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와 상담 제공

위조상품제보센터(www.brandpolice.co.kr)가 인터넷상에 개설되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조상품이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보고할 수 있고, 또한 IPR분쟁에 대해 중재 및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에서 분쟁대응에 이르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공익변리사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변리서비스의 소외 지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2 국제 협력 강화

다자간 협력 강화

2009년부터 선진 5개국 특허청(IP5: 한·미·일·중·유럽)간의 상호협력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가간 심사실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 분석, 심사관 교육과정의 교차참가, 심사관 합동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심사기준에 대한 국제적 조화와 국가간 심사결과에 대한 상호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APEC 지식재산권 전문가 단체(IPEG)에 가입하여 이 포럼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특히, 한국은 국제적인 프로모션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간 협력 강화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와 11건의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RCEP등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협력관계를 넓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 출원 제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해외 출원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위해 '70년 체결되어 '78년 발효된 다자 조약입니다. ('14. 8월 현재 계약국 148개국)

※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한국은 특허협력조약(PCT) 1장에 1984년, 2장에 1990년 가입하여 WIPO 또는 한국특허청에 직접 국제출원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선택하는 경우, 특히 북한을 지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PCT규칙 4.9(b)의 우선일로부터 15개월 내에 예비 지정국을 확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오류가 지정국 선택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국내절차 단계에 진입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중대한 문제로서 다시 대

한국에서 신규 출원으로 재출원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WIPO를 통하여 공개되어 발명의 신규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저명 상표의 보호

한국의 「상표법」상 주지, 누구에게나 알려진 저명한 상표는 그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상표가 등록 받을 수 없도록 보호 받고 있습니다. 저명 상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 의한 상표등록은 거절되며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저명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 출원의 경우에도 거절될 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과 함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하여도 저명상표가 보호됩니다. 타인의 성명, 상호, 저명 상표를 포함하는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 경쟁 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침해 예방, 관련 손해 배상 및 업무상 신용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형사상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처: 특허청 콜센터 1544-8080
- 저작권 관련 문의처: 저작권위원회 대표번호 02-2660-0000
- 문화체육관광부 대표번호 044-203-2000(담당과 - 문화콘텐츠사업실 저작권정책과)

Doing Business in Kore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부 록

1장 KOTRA 투자거점무역관

Overseas FDI Network

미국

뉴욕	KOTRA New York	
	Address	460 Park Avenue, 14th Floor, New York, NY 10022, U.S.A.
	Tel	(1-212)826-0900
	Fax	(1-212)888-4930
	Homepage	www.kotra.or.kr/KBC/newyork
로스앤젤레스	KOTRA Los Angeles	
	Address	4801 Wilshire Blvd., Suite. 104, Los Angeles, CA 90010, U.S.A.
	Tel	(1-323)954-9500
	Fax	(1-323)954-1707
	Homepage	www.kotra.or.kr/KBC/losangeles
시카고	KOTRA Chicago	
	Address	111 East Wacker Drive, Suite 2229, Chicago, Illinois 60601, U.S.A.
	Tel	(1-312)644-4323
	Fax	(1-312)644-4879
	Homepage	www.kotra.or.kr/KBC/chicago
달라스	KOTRA Dallas	
	Address	3030 LBJ Freeway # 1200, Dallas, Texas 75234, U.S.A.
	Tel	(1-972)243-9300
	Fax	(1-972)243-9301
	Homepage	www.kotra.or.kr/KBC/dallas
실리콘밸리	KOTRA Silicon Valley	
	Address	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 U.S.A.
	Tel	(1-408)432-5000
	Fax	(1-408)432-5056
	Homepage	www.kotra.or.kr/KBC/siliconvalley
워싱턴	KOTRA Washington D.C.	
	Address	1660 L street NW, Ste 301, Washington DC, 20036, U.S.A.
	Tel	(1-202)857-7919
	Fax	(1-202)525-2769
	Homepage	www.kotra.or.kr/KBC/washingtond
디트로이트	KOTRA Detroit	
	Address	Columbia Center II, Suite 545, 101 W. Big Beaver Road, Troy, MI 48084, U.S.A.
	Tel	(1-248)619-1601
	Fax	(1-248)619-1615
	Homepage	www.kotra.or.kr/KBC/detroit

호주

시드니	KOTRA Sydney	
	Address	Suite 4, Level 24, 1 Market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Tel	(61-2)9264-5199
	Fax	(61-2)9264-5299
	Homepage	www.kotra.or.kr/KBC/sydney
멜버른	KOTRA Melbourne	
	Address	Level 12, 468 St. Kilda Road Melbourne Vic 3004, Australia
	Tel	(61-3)9860-0500
	Fax	(61-3)9860-0599
	Homepage	www.kotra.or.kr/KBC/melbourne

캐나다

밴쿠버	KOTRA Vancouver	
	Address	780-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Canada V6C 3E1
	Tel	(1-604)683-1820
	Fax	(1-604)687-6249
	Homepage	www.kotra.or.kr/KBC/vancouver
토론토	KOTRA Toronto	
	Address	2St. Clair Avenue West, Suite 800, Toronto, Ontario M4V 1L5 Canada
	Tel	(1-416)368-3399
	Fax	(1-416)368-2893
	Homepage	www.kotra.or.kr/KBC/toronto

유럽

함부르크	KOTRA Hamburg	
	Address	Axel-Springer-Platz 3, Haus B, 20355 Hamburg, Germany
	Tel	(49-40)3405-740
	Fax	(49-40)3405-7474
	Homepage	www.kotra.or.kr/KBC/hamburg
뮌헨	KOTRA Munich	
	Address	Tal 12, 80331 Munich, Germany
	Tel	(49-89)2424-2630
	Fax	(49-89)2424-2639
	Homepage	www.kotra.or.kr/KBC/munich
프랑크푸르트	KOTRA Frankfurt	
	Address	MesseTurm 33. OG,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M, Germany
	Tel	(49-69)242-9920
	Fax	(49-69)2535-89
	Homepage	www.kotra.or.kr/KBC/frankfurt

파리	KOTRA Paris	
	Address	19, Avenue de l'Opera 75001 Paris, France
	Tel	(33-1)5535-8888
	Fax	(33-1)5535-8889
	Homepage	www.kotra.or.kr/KBC/paris
런던	KOTRA London	
	Address	1st Flr, Brettenham House North, 12-13 Lancaster Place, London WC2E 7EN, United Kingdom
	Tel	(44-20)7520-5300
	Fax	(44-20)7240-2367
	Homepage	www.kotra.or.kr/KBC/london
스톡홀름	KOTRA Stockholm	
	Address	Svardvagen 11C, 182 33 Danderyd, Sweden
	Tel	(46-8)308-090
	Fax	(46-8)306-190
	Homepage	www.kotra.or.kr/KBC/stockholm
코펜하겐	KOTRA Copenhagen	
	Address	Holbergsgade 14, 3rd Floor DK-1057, Copenhagen, Denmark
	Tel	(45)3312-6658
	Fax	(45)3332-6654
	Homepage	www.kotra.or.kr/KBC/copenhagen
암스테르담	KOTRA Amsterdam	
	Address	Strawinskylaan1253, 1077 XX Amsterdam, The Netherlands
	Tel	(31-20)673-0555
	Fax	(31-20)673-6918
	Homepage	www.kotra.or.kr/KBC/amsterdam
브뤼셀	KOTRA Brussels	
	Address	Rond Point Schuman 11, 1040 Brussels
	Tel	(32-2)203-2142
	Fax	(32-2)203-0751
	Homepage	www.kotra.or.kr/KBC/brussels
밀라노	KOTRA Milano	
	Address	Via Larga 2, Milano 20122, Italy
	Tel	(39-02)795813
	Fax	(39-02)7202-2491
	Homepage	www.kotra.or.kr/KBC/milano
취리히	KOTRA Zurich	
	Address	Claridenstrasse 22, CH-8002 Zurich, Switzerland
	Tel	(41-44)503-5300
	Fax	(41-44)202-4318
	Homepage	www.kotra.or.kr/KBC/zurich

마드리드	KOTRA Madrid	
	Address	Torre Europa, planta 9B, Paseo de la Castellana 95, 28046 Madrid, Spain
	Tel	(34-91)556-6241
	Fax	(34-91)556-6868
	Homepage	www.kotra.or.kr/KBC/madrid
빈	KOTRA Vienna	
	Address	Mariahilferstrasse 77-79/1/3 (Generali Center, 3rd Fl.) A-1060 Vienna, Austria
	Tel	(43-1)586-3876
	Fax	(43-1)586-3979
	Homepage	www.kotra.or.kr/KBC/vienna

일본

도쿄	KOTRA Tokyo	
	Address	9th Floor Shinkokusai Bldg, 3-4-1 Marunouchi, Chiyoda-Ku, Tokyo, Japan(100-0005)
	Tel	(81-3)3214-6951
	Fax	(81-3)3214-6950
	Homepage	www.kotra.or.kr/KBC/tokyo
오사카	KOTRA Osaka	
	Address	20th Floor, Osaka Kokusai Bldg., 3-13, Azuchimachi 2-Chome, Chuo-Ku, Osaka, Japan(541-0052)
	Tel	(81-6)6262-3831
	Fax	(81-6)6622-4607
	Homepage	www.kotra.or.kr/KBC/osaka
후쿠오카	KOTRA Fukuoka	
	Address	11th Floor, Nihonseimei Hakataekimae Bldg., 3-2-1 Hakataekimae, Hakata, Fukuoka, Japan (810-0011)
	Tel	(81-92)473-2005
	Fax	(81-92)743-2007
	Homepage	www.kotra.or.kr/KBC/fukuoka
나고야	KOTRA Nagoya	
	Address	23rd Floor, Nagoya International Center Bldg., 47-1, Nagono 1-Chome, Nakamura-Ku, Nagoya-Shi, Aichi-Pref, 450-0001 Japan
	Tel	(81-52)561-3936
	Fax	(81-52)561-3945
	Homepage	www.kotra.or.kr/KBC/nagoya

중화권

베이징	KOTRA Beijing	
	Address	29th Floor, Beijing POSCO Center, Hongtai East St., Wangjing,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Tel	(86-10)6410-6162
	Fax	(86-10)6505-2310
	Homepage	www.kotra.or.kr/KBC/beijing

상하이	KOTRA Shanghai	
	Address	Room 3110,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d Shanghai, China(200336)
	Tel	(86-21)5108-8771-2
	Fax	(86-21)6129-6015, 6236-8211
	Homepage	www.kotra.or.kr/KBC/shanghai
광저우	KOTRA Guangzhou	
	Address	Unit 2904-07A, Teem Tower No.208 Tianhe Rd., Tianhe District, Guangzhou, China(510620)
	Tel	(86-20)2208-1600
	Fax	(86-20)2208-1636
	Homepage	www.kotra.or.kr/KBC/guangzhou
칭다오	KOTRA Qingdao	
	Address	Room 905, Capland Center Office Building, No.10 Yanerdao Road, Shinan District, Qingdao, China(266071)
	Tel	(86-532)8388-7931
	Fax	(86-532)8388-7935
	Homepage	www.kotra.or.kr/KBC/qingdao
홍콩	KOTRA Hongkong	
	Address	Room 3102, 31/F,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China
	Tel	(852)2545-9500
	Fax	(852)2815-0487
	Homepage	www.kotra.or.kr/KBC/hongkong
타이베이	KOTRA Taipei	
	Address	Room.2214, 22Floor, TWTC Int'l Trade Bldg., 333 Keelung Rd., Sec.1, Taipei 110, Taiwan, R.O.C
	Tel	(886-2)2725-2324
	Fax	(886-2)2757-7240
	Homepage	www.kotra.or.kr/KBC/taipei

아시아

싱가포르	KOTRA Singapore	
	Address	7 Temasek Boulevard, #13-02 Suntec Tower One, Singapore(038987)
	Tel	(65)6426-7200
	Fax	(65)6223-5850
	Homepage	www.kotra.or.kr/KBC/singapore

중동

두바이	KOTRA Dubai	
	Address	Room No. 202, Level 102, Arenco Tower Dubai Internet City, Dubai, PO.Box 12859 U.A.E.
	Tel	(971-4)450-4360
	Fax	(971-4)450-4350
	Homepage	www.kotra.or.kr/KBC/dubai

2장 수탁기관 리스트

Delegated Agencies

수탁기관	부서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민은행	외국고객부	02-2073-8954	[0453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5층 (국민은행,외국고객부)
경남은행	외환사업부	055-290-8495	[5131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경남은행,외환사업부)
광주은행	외환사업실	062-239-6555	[61470]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광주은행,외환사업실)
기업은행	외국고객팀	02-729-7285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을지로2가, IBK파이낸스타워) (기업은행, 외환사업부 외국고객팀)
농협은행	외환팀	02-2131-1611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4층(농협은행,외환팀)
대구은행	외환사업부	053-740-2946	[42123]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외환사업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	051-661-4665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산은행 본점 15층 (부산은행, 외환사업부)
산업은행	무역금융실	02-787-7536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산업은행,무역금융실)
수협	국제금융실	02-2240-2605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수협은행, 국제금융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업금융운영센터	02-3702-3894	[031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업금융운영센터)
신한은행	외국고객부	02-2151-2872	[04513]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9길 20 (신한은행,외국고객부)
한국씨티은행	중앙기업업무센터	02-3455-2606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외국인투자사업부	02-729-0452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KEB하나은행,외국고객부)
우리은행	글로벌투자지원센터	02-3789- 1899(330)	[066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2층 (우리은행, 글로벌투자지원센터)
전북은행	외환업무팀	02-751-2489	[07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 JB금융지주빌딩 3층
제주은행	자금운용부	064-720-0236	[631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90
뉴욕멜론은행	기업신탁부/업무부	02-6137-0360	[07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번지 원아이에프씨 29층 (뉴욕멜론은행)
도이치은행	자금관리업무부	02-724-4281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서린동) 영풍빌딩 18층 (도이치은행)

디비에스은행	대고객부	02-6322-2661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18층 (디비에스은행)
엠유에프지은행	송금과	02-399-6413	[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7층 (엠유에프지은행 서울지점)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외환송금그룹	02-6364-7262	[0453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서관 12층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GCBS팀	02-3782-8564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9층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오퍼레이션	02-6730-0142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4층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바클레이즈은행	자금업무부	02-2126-2700	[0453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23층 (바클레이즈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법인지원부	02-788-1760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센터 27층(뱅크오브아메리카)
비엔피(BNP)파리바은행	송금대부계	02-317-1776	[0463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24층 (BNP파리바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은행	자금관리부	02-2195-7820	[031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D타워 D1 23층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아이앤지은행	업무부	02-317-1851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11층 (아이앤지은행)
야마구찌은행 부산지점	업무팀	051-462-3281	[4893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4층 (야마구찌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	자금업무부	02-758-5331	[04516]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5 제이피모간프라자(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
중국건설은행	운영부	02-6730-3611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4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영업부	02-3788-6617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1층(중국공상은행)
중국교통은행	회계영업부	02-2022-6837	[0452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교통은행 서울지점)
중국은행	영업부	02-399-5925	[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1층 (중국은행)
크레디아그리콜 코퍼레이트	국내업무부	02-3700-9632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21층(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
호주뉴질랜드은행	오퍼레이션	02-3700-3143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22층(호주뉴질랜드은행)
홍콩상하이(HSBC)은행	업무부	02-2004-0336	[04511]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HSBC은행)
중국광대은행	운영부	02-3788-3790	[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23층 (중국광대은행)

3장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리스트

Useful Business Contacts(Law Firms and Accounting Firms)

법무법인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김·장 법률사무소	정경택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950	이경윤	한국어, 영어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은행, 외국인투자, 해외법무, 사모투자, 방송·통신	82-2-3703-1181
				김진오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사모투자, 국제분쟁, 유럽, 프랑스, 독일	82-2-3703-1261
				김효상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건설·부동산 분쟁, 부동산·건설, 자산운용, 독일, 기업지배구조, 방송·통신	82-2-3703-1409
				박상호		에너지·자원, 기업인수·합병, 프로젝트 파이낸스, 해외법무, 지식재산권	82-2-3703-1747
				윤여민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일본,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82-2-3703-1766
				박정준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기업인수·합병, 외국인투자, 부동산·건설, 인사·노무, 독일, 유럽	82-2-3703-1153
				최원탁	한국어, 중국어, 영어	중국, 외국인투자, 기업인수·합병	82-2-3703-1925
늘품	천성훈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4, 2층	8	천성훈	영어, 베트남어	베트남대사관번역공증인증 출입국, 행정, 비자업무 투자상담, 법인설립, 자문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82-2-725-3003
				최지혁			
				김유진			
대호	석동현, 최수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9, 6층	18	석동현	영어, 중국어	비자 취득 등 출입국 관련자문	82-2-568-5200
				신동욱	영어	자회사, 지사, JV 설립, 외환거래 규정 자문, 외투기업 세제혜택 등 세무 자문, 주식양수도 등 M&A 관련 자문, 경영지원 서비스, 외투기업 경영 자문	
				임동번	일본어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동북아	김신호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서관 416호	9	김신호	중국어	한중간의 상호투자, 기업 인수합병, 법률, 투자자문	82-2-596-8111
				이경재	영어	법률, 투자자문	
				장윤석			
랜드마크	김재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21층	30	김재훈	영어	기업 인수·합병, 기업투자 중 기업법무, 조세	82-2-533-7979
				유형준			
				박효선			
				채준병	일본어	기업법무, 조세, 민사, 형사	
				최우식	영어	기업법무, 조세, 민사, 형사, 노동	
				최원우			
				조훈희			
				이소현	중국어	기업 인수·합병, 기업투자 중 기업법무, 조세	
				안완진			
주건화							
(유)로고스	양승국, 김재복, 김무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8,14,16층)	115	류두현	영어	해외사업, 합작투자	82-2-2188-1014
				변윤석		외국인투자, 회사법, 기업인수합병	82-2-2188-1017
				황윤철		해외사업, 국제거래	82-2-2188-2839
				이한나		국제거래, 해외사업, 국제중재	82-2-2188-2836
				박정열		기업인수합병, 외국인투자, 해외사업	82-2-2188-2837
				기문주	중국어	의료법, 노동법	82-2-2188-1050
				임형민		회사법, 중국기업에 의한 국내 투자	82-2-2188-1025
				김동주		회사법, 중국기업에 의한 국내 투자	82-2-2188-2843
				한정애	일어	회사법, 도산법, 일본기업의 국내 투자	82-2-2188-2831
				린	임진석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10층	31
강인철	영어	국제분쟁	82-2-3477-6300				
차선희		금융, HR, 국제분쟁	82-2-3477-3003				
박성준		에너지, 인프라	82-2-3477-8500				
이홍원	영어/폴란드어	기업 투자, M&A, 금융	82-2-3477-3003				
윤현상		M&A, Investment, PEF, 금융	82-2-3477-8500				
Milosz Zurkowski		Investment, 금융, 국제소송, 중재, 도산, HR	82-2-3477-8500				
김용갑	일본어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82-2-3477-3003				
김종식		M&A, 공정거래, 부동산	82-2-3477-8585				
비츠로	이찬승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86 신원빌딩 502호	4	송혜미	영어, 일본어	지사설립 절차 대행, 계약서 검토, 기타 자문 및 소송 업무	010-8277-2024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버리	김인중, 이수정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407호	4	이수정	영어, 일본어	법인설립, 재무, 분쟁조정	051-782-9226
				김지영	영어		
(유)산우	임정혁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33 허브원빌딩 7층	13	문하영	영어, 불어	총괄	82-2-584-5533
				김하진	영어	법률자문, 국내 법인설립 대행, JV, 해외투자, 인수·합병, 국제중재	
				이승민		국제거래, 기업자문, JV	
				안준학		국제거래, 기업자문, 형법, 민법	
양현	김의재, 최성준, 김수창, 최경준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 25층	45	채연정	영어	법인, 지사, 합작법인 등 설립,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거래, M&A	82-2-397-9840
				최성현		비자 취득 등 출입국 관련 자문 및 기업법률 관련 자문	82-2-397-9886
(유)원	강금실, 윤기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8, 11층	58	이광수	영어	기업법무 (기업의 인수·합병, 파산·회생), 금융·증권 (증권발행·기업공개), 국제법무	82-2-3019-2893
				홍용호		국제법무 (국제법무일반,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국제 중재)	82-2-3019-5453
				박효준		기업자문 일반, M&A, 국제투자 및 거래, EPC 프로젝트, 국제소송 및 중재, 국제통상, 컴플라이언스	82-2-3019-5455
				천창현		기업법무 (기업의 인수·합병, 파산·회생), 국제법무	82-2-3019-2152
				최현오		기업법무, 건설·부동산 (부동산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증권 (구조화금융·파생상품), 국제법무	82-2-3019-5453
				이영주		기업법무 (회사설립, 투자 자문, 계약서 검토), 국제법무	82-2-3019-5455
(유)울촌	윤용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	349	이형근	영어	국제소송 및 중재, 해외 부동산 개발 및 건설/플랜트 사업	82-2-528-5517
				변웅재	영어, 중국어	기업법무 및 금융, 해외, 중국, 환경·에너지, 북한	82-2-528-5797
				이승민	영어, 프랑스어	공정거래, 방송통신, 의료계약, 행정 분쟁, 건설부동산 분쟁, 환경·에너지	82-2-528-5705
				이승목	영어	지적재산권, 부정거래,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특허/실용신안, IP Risk Management(IP compliance), 지적재산권 조사/평가, 지적재산권 라이선스/거래, 해외 분쟁 매니지먼트	82-2-528-5942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유)울촌	윤용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	349	김중부	일본어, 중국어	기업공개(IPO), 기업인수합병(M&A), 해외투자(인도네시아 등), 금융일반, 펀드, PE	82-2-528-5043
				이태혁	영어	기업법무 및 금융, 기업인수합병(M&A), 해외투자(인도네시아 등), 금융일반, 펀드, PE	82-2-528-5512
				임민택	영어, 아랍어	인도네시아/동남아시아, 중동, 해외 부동산 개발 및 건설/플랜트 사업, 해외, 기업법무 및 금융, 기업인수합병(M&A)	82-2-528-5406
				김중부	일본어, 중국어	기업공개(IPO), 기업인수합병(M&A), 해외투자(인도네시아 등), 금융일반, 펀드, PE	82-2-528-5043
				이태혁	영어	기업법무 및 금융, 기업인수합병(M&A), 해외투자(인도네시아 등), 금융일반, 펀드, PE	82-2-528-5512
				임민택	영어, 아랍어	인도네시아/동남아시아, 중동, 해외 부동산 개발 및 건설/플랜트 사업, 해외, 기업법무 및 금융, 기업인수합병(M&A)	82-2-528-5406
				Andrew White	영어, 독일어	송무, 건설 · 부동산 분쟁, 국제소송 및 중재, 보험 분쟁, 부동산금융 분쟁, 건설, 은행 · 금융일반, 자산운용 · 집합투자, 내부조사	82-2-528-5986
				Moritz Winkler		해외, 유럽, 기업인수합병(M&A), 지적재산권, 노동, 국제소송 및 중재, 자동차, 중남미/남유럽	82-2-528-5483
				이화준	영어, 러시아어	해외투자, 기업인수합병(M&A), 국제소송및중재, 환경에너지, 부동산, 러시아/CIS, 베트남/ 동남아시아, 북한	82-2-528-5519
				강수구	영어, 베트남어	기업법무 및 금융, 은행 · 금융일반, 해외, 베트남/ 동남아시아	82-2-528-5561
				이홍배		해외투자, 베트남/동남아시아, 부동산 건설, 해외 부동산 개발 및 건설/플랜트사업, 기업법무 및 금융, 기업인수합병(M&A)	94-4-3837-8200
				윤새봄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해외투자, 기업법무 및 금융, 베트남/동남아시아, 러시아/CIS, 중동, 중남미/남유럽, 유럽	82-2-528-5035
				이승범	영어, 일본어	기업인수합병(M&A), 기업 내부조사, 공정거래, 일본, 자동차	82-2-528-5091
				최용환		국제조세, 조세쟁송	82-2-528-5709
				조현철	영어, 프랑스어	M&A, 해외투자, 럭셔리 산업	82-2-528-5958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이공	허진민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8, 3층	5	강두웅	영어	-국제거래 계약서 검토 및 법적위험관리 법률자문 -투자자문 및 인수합병 법률 검토 (M&A, Escrow, Funding Agreement, Due Diligence Report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FDI, 외환관련업무(신고, 허가등) -국내 및 해외 현지 법인설립	82-2-2038-3620
				허진민		-국제거래 계약서 검토 및 법적위험관리 법률자문 -투자자문 및 인수합병 법률 검토 (M&A, Escrow, Funding Agreement, Due Diligence Report 등)	
				양홍석		-국내 및 해외 현지 법인설립	
				황영민		투자자문 및 인수합병 법률 검토 (M&A, Escrow, Funding Agreement, Due Diligence Report 등)	
				송지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FDI, 외환관련업무(신고, 허가등)	
이후	이종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1 아주빌딩 20층	13	이종건	영어, 중국어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의 국내투자, 국내외기업의 법률실사, 인수합병(M&A), 국제거래, 사모펀드 등 집합투자, 한중미 기업법무	010-7134-2198
				류권영	영어	국내외기업의 법률실사, 지적재산권, 저작권, 사모펀드 등 집합투자, 한중미 기업법무	010-7143-0882
				백은성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의 국내투자, 국내외기업의 법률실사, 인수합병 (M&A), 국제거래, 사모펀드 등 집합 투자, 한중미 기업법무	010-3271-7740
				권낙현		국내외기업의 법률실사, 지적재산권, 저작권, 국제거래, 인수합병(M&A)	010-6530-5709
인화국제	황주환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6, 은하빌딩 2층	3	황주환	영어	각종 민·형사송무, 계약, 투자자문	051-503-0037
				이민주			
				이정민			
(유)지평	이공현,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60 KT&G 서대문타워 10층	184	정철	영어	M&A/기업일반·국제거래/ 자원·에너지·인프라/중국/ 미얀마	82-2-6200-1753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류혜정	영어, 러시아어	합작법인 설립을 포함한 M&A / 기업 일반·국제거래 / 자원·에너지·인프라 / 국제건설 / 공공계약	82-2-6200-1722
				최정식	영어, 중국어, 일본어	M&A / 노동법 / 조세 / 중국 / 국제소송·국제중재	82-2-6200-1785
				서준희	영어, 일본어	M&A / 기업일반·국제거래 / 제약·바이오·의료 / 엔터테인먼트·미디어·문화 / 미얀마	82-2-6200-1763
				이훈	영어	외국인투자 업무 (외투법인 설립, 지분투자, 합작회사 등) / 기업일반(노동 포함) / 에너지, 환경 / 국제분쟁	82-2-6200-1851
				노충욱		M&A / 기업일반·국제거래 / 해외투자 / 금융·증권·사모펀드(PEF, HF) / 미국 / 인도 / 필리핀	82-2-6200-1810
				이상희		M&A/기업일반·국제거래/ 지적재산권/국제건설/해외업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82-2-6200-1793
				김옥림	중국어, 일본어, 영어	M&A / 기업일반·국제거래 / 중국	82-2-6200-1718
케이앤피	김태진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2901호	5	김태진	영어	법률자문, 민사, 형사, 외국인 투자 및 법인설립	032-864-8300
타임	이형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407호	3	이형우	영어	계약및세금	82-2-583-7203
헤리티지	최재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오피시아빌딩 1910호	3	황경태	영어	외국인투자 및 법인설립, 인수합병, 국제소송 및 중재	010-7220-3209
				조성환		법인설립대행, 민·형사 일반 송무, 법률자문	010-6220-5001
(유)화우	정진수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8, 19, 22, 23, 34층	311	나승복	중국어	중국, 한/중 투자, IPO, M&A, 해외투자, 일반 기업자문, 외국인투자, 사모투자, 금융규제 및 법규준수, 감독기관조사, 자본시장, 자산운용 등	82-2-6003-7137
				김한칠	러시아어	러시아·CIS, 유럽, M&A,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금융규제 및 법규준수, 은행·금융지주회사, 일반기업자문 등	82-2-6003-7524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유)화우	정진수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8, 19, 22, 23, 34층	311	이승기	영어	유럽, 동남아시아, 러시아·CIS, M&A, 기업 지배구조, 도산·기업회생, 해외투자, 금융, 금융분쟁, 감독기관조사, 금융규제 및 법규준수, 방송·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북한 등	82-2-6003-7519
				김권희		유럽, 동남아시아, 러시아·CIS, 일본, 중국,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국제무역통상, 일반기업자문, M&A, 구조화 금융,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등	82-2-6003-7566
				이준우		동남아시아, 한/베트남 투자, 재무, 조정, 일본, 중국, 러시아·CIS, 유럽, 금융, 사모투자,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프로젝트파이낸스,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일반기업자문 등	82-2-6003-7527
				장황림		동남아시아, 자산운용, M&A, 금융, 사모투자, 외국인투자, 보험, 비은행금융회사, 은행·금융지주회사, 일반 기업자문, 자본시장, 프로젝트파이낸스, 북한 등	82-2-6003-7594
				정해왕	일본어	일본, 한/일 투자, JV, 상업소송, 해상, 항공, 일반기업자문 등	82-2-6003-7567
				홍동오	영어	지식재산권, 일본, 금융규제 및 법규준수, M&A, 은행·금융지주회사, 일반 기업자문	82-2-6003-7549
				김원형		일본, M&A, 일반기업자문, 외국인투자, 자본시장규제, 자산운용, 프로젝트파이낸스, 사모투자, 보험 등	82-2-6003-7531
				강성운		IPO, 중국, 금융, 사모투자, 자본시장규제, 외국인투자, 금융규제 및 법규준수, 항공, 동남아시아 등	82-2-6003-7591
화이트 엔케이	홍지훈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31층	4	홍지훈	영어	자산금융, 자본시장	82-2-6138-8816
				김준희		분쟁조정(국제분쟁)	82-2-6138-8818
				김경석		M&A, PE	82-2-6138-8812
				전새별		분쟁조정(상업소송)	82-2-6138-8817

회계법인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회계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다산	김석호	서울 강남구 역삼로98길 23, 6층	56	안종남	영어	지사/법인설립, 급여서비스, 장부기장, 회계감사, 세무서비스	82-2-531-7472
				송성용	일본어		82-2-531-7458
대현	송재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169-11 한진빌딩 502호	44	우필구	영어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및 청산 대행, 기업회계(기장대리, 본사 재무보고), 자금 관리(경비 및 급여 대행 지급 등), HR 아웃소싱(급여, 4대보험), 세무 신고대행(부가세, 법인세) 및 세무자문(기타 이전가격 조사 등 국제조세), M&A 자문	82-2-558-8737
도원	임진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1, 5층	70	안섭	영어, 일어	연락사무소/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대행 및 자문,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관련자문(전략적제휴 또는 M&A),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장부기장, 급여 신고,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조세특례감면사업 신청대행, 회계감사	82-2-3453-3695
동남	조경영	서울 강남구 역삼로 153 케이엘넷 빌딩 4,5층	23	윤성일	영어	연락사무소, 지사 및 외투법인 설립, 장부기장 법인세/소득세/ 부가세등 각종 세무신고 및 자문, HR Outsourcing(급여, 4대보험), 기장대리를 포함한 재무보고패키지 작성, 자금관리(사무실경비, 급여지급대행포함), 국제조세관련자문 및 세무조사대행(고정사업장, 이전가격, 조세조약의 적용 등)	82-2-501-0024
				윤상수	중국어		82-2-557-7530 010-2567-7530
				김대우	영어		82-2-562-1152
리안	이상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9, 8층	50	조의행	영어	국내 진출 전반에 관한 자문 - 외투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설립 및 자문 - 외투법인의 회계 시스템 구축 - 회계아웃소싱, HR 아웃소싱, 세무신고 - 회계자문 (K-GAAP, IFRS) - 세무자문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국제조세) - 세무신고 (법인세, 부가세 등)	82-2-537-1807
				이수현			82-2-537-1807
				홍현수		회계아웃소싱, HR 아웃소싱, 세무신고	82-2-537-1807
				김새암			82-2-537-1807
삼덕	이용모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S&S 빌딩	441	최권정	영어	- 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 고정사업장 설립/신고 지원 - 급여 서비스 - 회계장부 및 재무패키지 작성 - 법인세 및 소득세 세무조정 - M&A, 배당 등 세무 및 회계 자문 - 사무지원서비스	82-2-397-6602
				하정훈		회계감사, 가치평가, 재무실사, 재무패키지 작성	82-2-397-6602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회계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삼일	김영식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0 AP빌딩	2133	강찬영	영어	Inbound audit 및 국내진출 자문	82-2-709-4788
				Daniel Fertig			82-2-709-8714
				전용욱	영어, 중국어	중국인 국내진출 자문 및 audit	82-2-709-7982
				안익홍	영어	세무	82-2-3781-2594
				박대준		M&A / Valuation	82-2-709-8938
				이회림		실사, Valuation, Outbound/Inbound M&A	82-2-709-0786
				이상은			82-2-709-6489
마자르 새빛	박승하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2층 마자르새빛 회계법인	25	박승하	영어	Accounting & Tax	82-2-3438-2406
				줄리앙 에르보	영어, 프랑스어	Audit, FAS	82-2-3438-2431
				이정민	영어	Audit	82-2-3438-2441
				심규택			82-2-343-2442
				램버트 보아빈	영어, 프랑스어	Accounting and outsourcing services	82-2-3438-2556
				심지원	일본어		82-2-3438-2563
				최애화	중국어		82-2-3438-2567
바른	김광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 11 대하빌딩 3층	29	오윤택	영어	구조조정 및 청산(연락사무소, 지사, 자회사), 외환거래 규정 컴플라이언스 및 자문, 회계, 기장대행, 원천징수세, VAT, 법인세 개인소득세 신고 자문, 사회보장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및 자문, 자금관리, 아웃소싱 서비스, 국제거래, 국내거래, 세무조사 지원 관련 자문, 조세불복	82-2-761-3821
				문점식		세무 및 회계 자문, 급여, 법인세 신고, 조세불복, 법인설립, 아웃소싱 서비스, 외부감사	82-2-3775-4706
보명	이창열	부산 사상구 사상로 123, 5층	12	이창열	영어	회계감사, 내부감사, 재무실사, M&A자문	051-328-9328
Baker Tilly 성도	박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71-2 건설회관 17층	85	이민재	영어	세무자문(고정사업장 및 이전가격검토), 회계감사, 재무실사, 외국인투자지역신청, 고도기술사업신청대행 등	82-2-513-0208
				박영아		연락사무소,지사,현지법인설립대행및 자문,HR아웃소싱(급여),기업회계(기장 대리),세무신고대행(법인세,부가세등), 세무자문(고정사업장및소득세,법인세 원천세)	82-2-513-0278
				고태일		연락사무소, 지사, 현지법인설립대행 및 자문,HR아웃소싱(급여), 기업회계(기장대리), 세무신고대행(법인세, 부가세등), 세무자문(고정사업장 및 이전가격검토), 회계감사, 재무실사	051-460-4723
				김혜윤		HR아웃소싱(급여), 기업회계(기장대리),세무신고대행 (법인세, 부가세등), 회계감사 및 재무실사 등	051-460-4710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회계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신화	김성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6길15, 8/9층	25	양윤기	영어	M&A자문, 재무실사, 기타자문	82-2-561-7181
				김광수	일본어	법인설립, 기장, 세무자문, 회계감사	82-2-553-7956
				장태일		M&A자문, 재무실사, 기타자문	82-2-555-9211
안진	이정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 금융센터 One IFC 9층	959	윤경일	영어	감사, 회계자문, 금융기관 재무실사 및 M&A 자문, 회사설립 및 인허가 등	82-2-6676-1149
				허호영		감사, 회계자문, 금융기관 재무실사 및 M&A 자문 등	82-2-6676-1180
				조태진		감사, 회계자문, 금융기관 재무실사 및 M&A 자문 등	82-2-6676-3322
				박성호		내부통제제도(SOX) 검토 및 구축 자문, US GAAP 및 IFRS 자문, 재무실사	82-2-6676-3100
				황재호		M&A 자문, 재무실사, 기타 재무자문	82-2-6676-3129
				유지훈		회계감사(외국투자기업전문), 해외펀드 투자실사 전문, 재무관련 규정 및 기타 자문	82-2-6676-3124
				이동현		US GAAP, IFRS 감사 및 자문, 재무실사, 기타 재무자문	82-2-6676-3125
				김영재		회계감사, 재무실사	82-2-6676-1689
				전용석		M&A 자문, 재무실사	82-2-6676-1524
				서정욱		IFRS 감사 및 자문, 재무실사, 국내진출 자문 전반에 대한 coordinating	82-2-6676-1871
				나기영		회계감사(IFRS, K-GAAP), M&A 자문, 기타 재무자문, 내부통제 관련 자문, 국내진출 자문 전반에 대한 coordinating	82-2-6676-1530
				황승희		재무실사, 국내진출 자문 전반에 대한 coordinating	82-2-6676-1642
				유병문		US GAAP 및 IFRS 감사 및 자문, 재무실사, 내부통제 및 SOX 관련 회계 자문	82-2-6676-1546
오성	남시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9, 9층	18	이석형	영어, 중국어	외국인투자자문총괄, 회계감사, M&A자문, 재무실사, 세무자문	82-2-2631-1230
				위영		외국인투자상담, 외국인투자법인(지점 및 연락사무소 포함)설립자문, 외투법률서비스, 세무자문, 외국인스타트업자문	
				박영련	중국어	외국인(중국)투자(법인설립), 투자신고, 외국기업지사 및 연락사무소설치, 세무신고 및 기업회계(기장대리)	
				오카자키 유키	일본어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회계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오성	남시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9, 9층	18	Jason Song	영어	외국인(미주, 유럽)투자(법인설립), 투자신고, 외국기업지사 및 연락사무소설치, 세무신고 및 기업회계(기장대리)	82-2-2631-1230
				김미숙		외국인(동남아)투자, 투자신고, 외국기업지사 및 연락사무소설치, 세무신고 및 기업회계(기장대리)	
				최윤영		세무신고대행(법인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 근로소득원천세신고), 기업회계(기장대리), 4대보험관리, 본사재무보고패키지 작성	
				김건태			
				서준원			
				박주현			
				이순원			
위드	이영석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13층	29	강성규	영어	연락사무소, 지사, 외국인 투자법인 신고, 설립 및 청산, 기업회계 기장, 본사 재무보고, 급여 및 4대보험 대행, 세무신고 대행, 국제조세 및 M&A 자문, 회계감사, 기타 자문	82-2-2043-2747
				오동화			
이촌	정석용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16	유성일	영어, 중국어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대행 및 자문, Booking 및 세무신고대행(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원천세 등), 국제조세자문, 회계감사, M&A실사 및 자문, 일반세무 및 재무 자문	82-2-780-0889
				박승열	영어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대행(FDI), 세무자문, 세무신고, 아웃소싱 서비스, 부동산투자자문, 각종등기절차대행, 그룹보고서패키지 작성, 재무실사 및 기타 재무자문, 회계감사, 내부감사	82-2-3775-0065
				정성문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대행 및 자문, 세무자문(조세감면 등, 법인세제 관련 자문), 세무신고대행(법인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근로소득원천세 신고대행), 기업회계(기장대리)	82-2-6617-7210
				서관수		회계감사, 세무자문 및 세무조정, 외국투자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포함) 설립 자문, 외투 법률 서비스, 아웃소싱 서비스	051-715-0100
제원	박문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28	김상윤	일어	회사설립, 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 회계 및 세무위탁업무, 회계감사, 세무조사 대응, 급여 및 4대보험 업무, 기타 회계세무 종합자문, 재무실사 및 기타 재무자문	82-2-511-1402
				최병호	영어	외국인 투자 신고절차 안내, M&A자문, 재무실사, 회계감사, 부기대행, 세무대리	82-2-512-0164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회계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지성	이의웅, 이희수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34 (에셈타워 8층)	26	신명철	영어	- 가장 적합한 entity(liaison office, branch office, subsidiary)의 형태 자문 - 투자자금의 규모, 방식(loan, capital) 자문 - 설립 대행 및 자문 - 설립 후 운영 시 회계/세무서비스 - Outsourcing finance manager 서비스 - 외국환거래법 자문	010-8242-3945
진일	배영석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11, 일신빌딩 701호	55	이대진 최영윤	영어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기장대리, 그룹보고 패키지 작성 대행), 세무자문	82-2-6095-2137
태성	남상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6-2 케이큐브 빌딩 5층	100	김민정 정하준	영어	자회사및지사연락사무소설립대행 외국인투자기업장부작성및세무신고 외국인투자기업감사및경영컨설팅 M&A 자문, 재무실사	82-2-561-6513 82-2-561-0077
한영	서진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3-8F	1033	김지훈 신금철 신훈식 김홍식 석진현 우승엽 신장규 우승백	영어 일본어 영어 영어, 독일어	회계감사 세무자문 세무자문, 세무신고 대행(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신고,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대행), 기업회계(기장대리) 일반세무자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관련 자문	82-2-3787-6745 82-2-3787-6372 82-2-3787-6884 82-2-3787-6810 82-2-3770-0932 82-2-3787-6508 82-2-3770-0954 82-2-3787-6320
한울	남기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6층	174	남기봉 강정대 이준우 고현철 김성휘 윤형근 권일규 홍영지 심지수 위상영 박상현	영어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인증 실사 자문, 세무 기장 자문 회계감사, 재무실사, 가치평가, 기장(세무) 대리 회계감사, 기장(세무) 대리, 기타자문 등 현지법인설립, 기장, 세무대리 인증 실사 자문, 세무 기장 자문	82-2-2009-5762 82-2-2009-5701 82-2-2084-5811 82-2-2084-5860 010-8305-0490 82-2-2084-5825 82-2-2009-5784 82-2-316-6639 82-2-316-6622 82-2-316-6621 82-2-316-6638

KOTRA자료 19-009

외국인투자 가이드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19년 4월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투자종합상담실 (우: 06792)

전 화 1600-7119

홈페이지 www.kotra.or.kr

www.investkorea.org

ISBN 979-11-6097-916-9 (93320)

979-11-6097-917-6 (95320)(PDF)

